



日中韓連携 知的財産シンポジウム

Japan-China-Korea
International Symposium on Intellectual Property

日時：2021年**10月26日**(火)
14時～18時30分

DATE：Tuesday, October 26th, 2021
14:00 ~ 18:30 (JST, KST)
13:00 ~ 17:30 (CST)



오프닝		
14:00~14:30	인사말씀	Kiyoshi MORI 일본 특허청장
		Toshiya WATANABE 일본 지재학회 회장
		Lipu TIAN 중국 지식재산 연구회 이사장
		김원오 한국 지식재산 학회 회장
기조 강연		
14:30~15:00	강연	환경과 지식 재산, 그리고 WIPO 그린 Tomoki SAWAI (Director, WIPO Japan Office)
공통 테마 ESG와 지식재산		
15:10~15:55	강연	일본의 ESG 투자와 지식 재산 Kazunari SUGIMITSU (Professor, K.I.T. Toranomon Graduate School of Innovation Management)
		기업의 특허 관리와 분쟁의 국제적 해결 Wenxuan CHEN (Partner, SAELINK LAW)
		ESG의 법적 쟁점에 따른 기업의 효과적 대응방안 윤용희 (법무법인(유) 율촌)
15:55~16:40	Q&A	《Moderator》 Tomoki SAWAI (Director, WIPO Japan Office)
각국 테마		
16:50~17:35	강연	AI-데이터 계약의 실무와 과제 Tomokazu SAITO (Partner, LAB-01 Law Office)
		중국기업 지식재산권 전략: 이론, 현실적 수요 및 대책 제안 Xiaoqing FENG (Second-level Professor, China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한국 디자인보호법상 화상디자인의 법적 취급 김웅 (해움특허법인 변리사)
17:35~18:20	Q&A	《Moderator》 Masahiro SAMEJIMA (Patent Attorney, Attorney at Law, Founding Partner, Uchida & Samejima Law Firm)
클로징		
18:20	인사말씀	Junko SUGIMURA 일본 변리사회 회장

<u>Speakers' Profile</u>	... 3
<u>기초 강연</u>	... 17
환경과 지식 재산, 그리고 WIPO 그린 Tomoki SAWAI (Director, WIPO Japan Office)	... 19
<u>공통 테마 ESG와 지식재산</u>	... 27
일본의 ESG 투자와 지식 재산 Kazunari SUGIMITSU (Professor, K.I.T. Toranomon Graduate School of Innovation Management)	... 29
기업의 특허 관리와 분쟁의 국제적 해결 Wenxuan CHEN (Partner, SAELINK LAW)	... 39
ESG의 법적 쟁점에 따른 기업의 효과적 대응방안 윤용희 (법무법인(유) 울촌)	... 47
<u>각국 테마</u>	... 71
AI·데이터 계약의 실무와 과제 Tomokazu SAITO (Partner, LAB-01 Law Office)	... 73
중국기업 지식재산권 전략: 이론, 현실적 수요 및 대책 제안 Xiaoqing FENG (Second-level Professor, China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 81
한국 디자인보호법상 화상디자인의 법적 취급 김웅 (해움특허법인 변리사)	... 93

Speakers' Profile

Kiyoshi MORI

Commissioner, Japan Patent Office



Education

- MPA. John F.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Harvard University (1993)
- LL.B. Department of Law, University of Tokyo (1986)

Professional Career

- Vice Secretary General, Japan Association for the 2025 World Exposition (2019 - 2021)
- DG for International Cyber Economy Policy, METI (2016 - 2017)
- DG for International Affairs, Global ICT Strategy Bureau,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MIC) (2014 - 2016)
- Director, Planning Policy Div., Dept. of Natural Resources and Fuel, ANRE/METI (2011 - 2012)
- Director, Middle East and Africa Div., Trade Policy Bureau, METI (2008 - 2011)
- Chairman of the Junior Board Meeting for Policy Coordination, METI (2002)

Toshiya WATANABE

President, Intellectual Property Association of Japan



Education

- Ph.D. in inorganic material at the engineering college of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1994)

Professional Career

- Professor of U-tokyo Institute for Future Initiatives (IFI) and Technology Management for Innovation (TMI)
- General manager of U-tokyo Division of University Corporate Relations, head of the Office of Export Control
-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Association of Japan
- Chairman of planning committee of Cabinet Council Intellectual Property Headquarter
- Member of the Industrial Structure Council of th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Lipu TIAN

President, Chin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Education

- Graduate School of the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China(1981)
- Master of Science, honorary doctorate of Technical University of Munich, Germany

Professional Career

- Chairman of the China Intellectual Property Research Association
- Former Director of the Stat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nd Secretary of the Party Leadership Group
- Successively studied in the European Patent Office, the German Patent Office, the German Federal Patent Court and other institutions.
- As a visiting scholar, engaged in intellectual property research at the Max Planck Institute of Patent Law in Germany
- Organizers in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Outline"
- Elected as the most influential person in the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industry for eight consecutive years

Won Oh KIM

President,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Education

- Ph.D. Intellectual Property Law, Graduate School of Law, KOREA University (1997)
- Master of International Law, Graduate School of Law, KOREA University (1986)
- Bachelor of Law Faculty of Law, KOREA University (1986)

Professional Career

- Director of Inha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2019 -)
- Non-executive director of Korea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 (2019 -)
- Editor-in-Chief of KIPLA Journal, Senior Vice President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Law Association (2017 - 2019)
- Incheon City Intellectual Property Committee First Member /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Committee Expert Member (New Intellectual Property Division) (2008 - 2011, 2018 -)
- Full Professor, Law School of Inha University (Intellectual Property Law) / Vice President (ex) (2009 -)
- Associate Professor, Law School of Inha University (2007 - 2009)
- Sookmyung Women's University, Department of Law, Assistant & Associate Professor (2000 - 2007)
- Myung Shin & Partners (Patent Law Office), Patent Attorney / Vice-President (1993 - 2000)

Tomoki SAWAI

Director, WIPO Japan Office



Professional Career

- Director of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Japan Office (2019 -)
- Worked as Director, Information Technology Planning Office, Director, International Affairs Division, Director, Administrative Affairs Division, Director-General, Patent Examination Department (Mechanical Technology), and Director-General, Patent and Design Examination Department of the Japan Patent Office
- Worked as Chief Representative, Washington Office,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concurrent position of Director, Intellectual Property Department JETRO New York)
- Worked as the examiner and Administrative Patent Judge at the Japan Patent Office

Kazunari SUGIMITSU

Professor,
K.I.T. Toranomon Graduate School of Innovation Management



Education

- Ph.D of Tohoku University (2006)
- Master of Laws (LLM) at the University of Tokyo (1999)

Professional Career

- Professor, Patent Attorney, Kanazawa Institute of Technology Graduate School of Innovation Management
- Director, Intellectual Property Association of Japan (IPAJ)
- The Japanese government (JPO) granted the Distinguished Service Award for the promo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honor of the world's first unique examination he invented (2009)

Wenxuan CHEN

Partner, SAELINK LAW



Education

Doctor of Civil & Commercial Law, Renmin University of China

LL.M. University of Pennsylvania

Wharton Certificate, Wharton School

Professional Career

- One of the youngest Standing Fellow of Chin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Participated in the drafting of a number of judicial policies and interpretations under the guidance of Supreme People's Court of China
- Serves as an external supervisor at Law School of Renmin University of China, an arbitrator of South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and an external expert of Patent Examination Cooperation Center at China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
- Joined Alibaba Group as leading IP Protection Counsel as well as leader of Nonstandard Dispute Resolution Team
- Formerly a Presiding Judge at the Beijing No. 1 Intermediate People's Court, where he adjudicated more than 800 cases concerning disputes on intellectual property, antitrust, and commercial matters

Yonghee YOON

Partner, Yulchon LLC



Education

- LL.M. Stanford Law School,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2014)
- Stanford University, Hoover IP2 Summer Teaching Institute (2014)
- Ph.D./A.B.D. Seoul National University, Law/Environmental and Energy law (2012)
- M.A. Seoul National University, Environmental law (2008)
-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the Supreme Court of Korea (2006)
- LL.B.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4)

Professional Career

- Partner, Yulchon LLC (2009 -)
- Member, Internal Audit Committee, Ministry of Environment (2020 -)
- Lecturer, Law Times Korea: Legal Edu (Environmental Law) (2020 -)
- Research Director, Korean Environmental Law Association (2018 -)
- Legal Advisor, Korea Western Power Co.,Ltd. (2017 -)
- Adjunct Professor, Jeju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2016 -)
- Bar Examiner, Ministry of Justice (2012 -)
- Adjunct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School of Law (Environmental law) (2020 - 2021)
- Legal Advisor, Ministry of Environment (2016 - 2017)
- Commendation, the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of Korea (2012)

Tomokazu SAITO

Partner, LAB-01 Law Office



Education

- MSc (Economics) of Purdue University
- MPP of UC Berkeley
- JD of Keio University's Law School
- BA (Cultural Anthropology) of Tohoku University

Professional Career

- Founded LAB-01 Law Office
- Contributing to make AI and data policies of METI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of Japan
- Provided legal assistance for startups in years, promoting business collaborations among corporations with diverse cultures and backgrounds
- Worked as a legal counsel for Preferred Networks, Inc., a Tokyo-based tech unicorn, and also engaged in business planning for Mercari, Inc., a growing Japan-originated EC company
- Honored to be one of the 2013 Fulbright Fellowship grantees

Xiaoqing FENG

Second-level Professor,
China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Education

- Doctor, Law of Renmin University of China

Professional Career

- Head of the National Key Discipline and Academic Leader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of CUPL, Director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Institute, Head of Master and Doctoral Program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Director of Intangible Asset Management Research Center of CUPL
- Executive Director of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esearch Center
- Member of the Academic Advisory Committee of the China Intellectual Property Research Society
- Vice chairman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Professional Committee of the Chinese Intellectual Property Research Society
- Director of the Chinese Law Society
- Vice chairman of the Chinese Intellectual Property Law Research Society
- Member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Case Guidance Expert Committee
- Researcher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Judicial Protection Research Center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 Won many national and provincial honors based on his achievements in corporate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and other aspects

Woong KIM

Managing Partner,
Patent Attorney, HAEUM Patent & Law Firm



Education

- Ph.D candidate of Intellectual Property at Hongik University (2020)
- Ma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MIP) at Hongik University (2018)
- B.Eng. in Electronic Engineering at Korea University (2008)
- B.S. in Biology at Yonsei University (2002)

Professional Career

- Member of Korean Patent Attorneys Association (KPAA)
- Adjunct professor in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Training Institute of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Adjunct professor in Korea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
- Member of the design patent law revision committee at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Masahiro SAMEJIMA

Patent Attorney, Attorney at Law,
Founding Partner, Uchida & Samejima Law Firm



Education

- Department of Metallurgical Engineering,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Professional Career

- Founded the Uchida & Samejima Law Firm (USLF) , which has grown up to be one of the largest IP boutiques in Japan (2004)
- Serves his resource to various public offices including JPO (Japanese Patent Office) and METI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to playing role as to be a member of governmental committee regarding IP policy and governmental strategy
- Awarded for "Intellectual Property Achiever"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JPO) (2012)
- Director, Intellectual Property Association of Japan (IPAJ)
- A very famous fictional IP attorney Kamiya appeared in "Shitamachi-rocket" (popular novel and TV drama) was modeled on Mr. Samejima, which lead him to be one of the most popular speakers in this sector

Junko SUGIMURA

President, Japan Patent Attorneys Association



Education

- Department of Applied Chemistry, Faculty of Science and Engineering, Waseda University

Professional Career

- Executive partner of SUGIMURA, TAMURA & PARTNERS International Patents and Trademarks
- Part-time Lecturer at Waseda Business School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nd Finance)
- Vice-President of Licensing Executive Society International
- Technical Expert Advisor of IP High Court (2009-)
- IP Mediator of Tokyo District Court (2019-)
- Member of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Headquarters, and Conception Committee of Cabinet Office (2012 - 2016, 2019 -)
- Member of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Advisory Committee of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2014 -)
- Member of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Intellectual Property Subcommittee, Industrial Structure Council of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2017 - 2020)
- Member of Patent System, Intellectual property Subcommittee, Industrial Structure Council of Japan Patent Office (2016 -)
- Council Member of Japan Group of Asia Patent Attorneys Association (APAA) (1995 -)
- Japan Association Director of International Feder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ttorneys (FICPI) (201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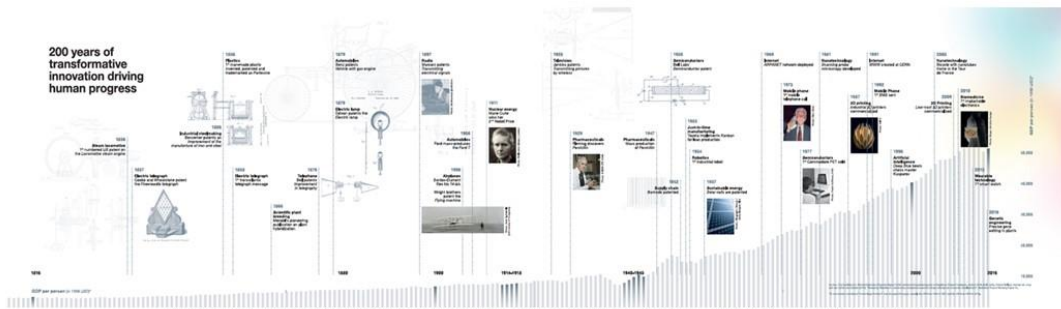
기초 강연

환경과 지식 재산, 그리고 WIPO 그린

2021년 10월 26일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일본사무소
 사와이 도모키

이노베이션의 공죄

- 기술 개발에 의해 인류는 크게 발전, 풍요롭고 안전한 세상으로. 지식 재산권 제도는 기술 개발을 장려.



- 반면, 환경 문제를 등한시 해왔다는 지적도 많다.

프란치스코 교황 '환경에 관한 회칙'(2015년 6월)을 발표
 '과학 기술의 힘이 커지는 것은 '진보' 그 자체가 커지는 것이고, (중략) 마치 현실, 선의, 진실이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힘으로부터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현대인은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하도록 훈련되어 있지 않다.', '경제는 인간에게 끼치는 잠재적인 악영향은 생각하지 않고, 이익을 얻기 위하여 온갖 기술의 진보를 받아들인다. (중략) 환경 악화의 교훈을 배우는 것이 너무 느린 것이다.' (임시 번역: WIPO 일본사무소)

ESG 투자에 대한 높은 관심

-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적극적인 기업은 수익성과 성장성이 높고(※1), 온실가스 배출의 억제는 기업 퍼포먼스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2).
(※1 LINS, SERVAES AND TAMAYO(2017), ※2 하나자리 마사하루 편저 <변모하는 코퍼레이트 거버넌스>(2019))
- ESG 투자가 최근,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확대. 총 투자의 과반을 차지하는 지역도.

ESG 투자의 지역별 추이 단위: 10억 미 달러, %

	2012	2014	2016	2018	2020
유럽	8,758 (49.0)	10,775 (58.8)	12,040 (52.6)	14,075 (48.8)	12,017 (41.6)
미국	3,740 (11.2)	6,572 (17.9)	8,723 (21.6)	11,995 (25.7)	17,081 (33.2)
캐나다	589 (20.2)	729 (31.3)	1,086 (37.8)	1,699 (50.6)	2,423 (61.8)
일본	10 (-)	7 (-)	474 (3.4)	2,180 (18.3)	2,874 (24.3)
아시아(일본 제외)	30 (0.6)	45 (0.8)	52 (0.8)	N/A	N/A
호주, 뉴질랜드	134 (12.5)	148 (16.6)	516 (50.6)	734 (63.2)	906 (37.9)
합계	13,261 (21.5)	18,276 (30.2)	22,890 (26.3)	30,683 (-)	35,301 (-)

주: 실액 괄호 안은 총 운용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료: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REVIEW 2012, 2014, 2016, 2018, 2020를 바탕으로 WIPO 일본사무소 작성

SDGs와 지식 재산권 제도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전문

‘우리는 세상의 지속적이고 강인한(탄력적인) 로드맵으로 바꾸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대담하고 혁신적인 수단을 취하기로 결의했다. 우리는 이 공동의 여로에 오르기에 앞서, 단 한 사람도 뒤처지지 않게 할 것을 맹세한다.’



출처: 국제연합홍보센터 웹사이트

단 한 사람도 뒤처지지 않는다 No one will be left behind

↓

선진국, 개발도상국을 불문하고,
다 함께 인류의 목표, 그러므로 실현에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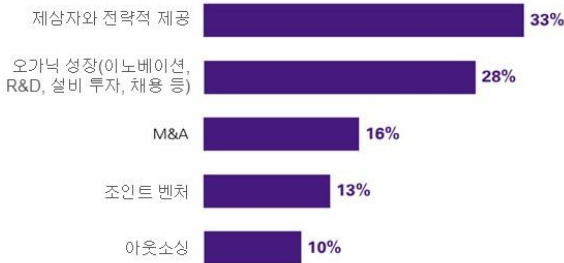
↓

SDGs의 대부분이 환경 관련,
지식 재산권 제도로써 무엇을 할 수 있는가?

WIPO GREEN이 하나의 해답

- 오픈 이노베이션은 기업 경영의 중요 과제
- WIPO GREEN는 환경 기술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촉구하기 위한 국제기구가 운영 하는 글로벌한 공적 플랫폼. 2013년부터.

세계의 경영층이 중시하는 중요한 전략



출처: 2018 Global CEO Outlook, KPMG 인터내셔널

【WIPO GREEN의 포인트】

- ✓ 환경 기술의 제공자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의 자리를 제공
- ✓ 환경 기술, 요구 사항, 전문가의 3가지 데이터베이스
- ✓ 기업, 대학, 기업, 단체 등 누구나 무료로 참가 가능
- ✓ 라이선스 등의 교섭은 당사자끼리, WIPO와 정부는 간섭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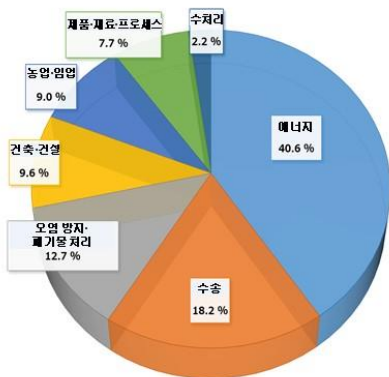
웹사이트: <https://www3.wipo.int/wipogreen/en/>

각종 팸플릿: <https://www.wipo.int/publications/en/>

4

환경 기술 데이터베이스

- 국제기구로서 ‘오늘까지 환경 보전 기술의 보급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내건 이니셔티브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인식하에 환경 기술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주력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기술 분야의 비중

WIPO GREEN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WIPO 일본사무소가 작성(2021년 8월 시점)

전 세계로부터 아래의 정보가 수록되어, 검색 가능:

- ✓ 12만 건 이상의 환경 기술
※ 2021년 9월 현재. PATENTSCOPE로부터 이관된 데이터 포함.
- ✓ 기술의 개요, 장점, 발전 단계, 이용 조건, 관련 지식 재산 정보, 연락처가 등록
- ✓ 미국, 일본, 이스라엘, 중국, 독일에서 개발한 기술이 특히 많다

5

요구 사항 데이터베이스

- 제공된 기술뿐만 아니라 환경 기술을 필요로 하는 요구 사항 정보의 등록이 가능
- 각국 기관, 지자체 등이 등록, 다만 **280**건 정도로 저조(2021년 9월 현재)
- WIPO로서 각 지역의 요구 사항 정보 발굴에 노력한다(촉진 프로젝트)



【예시】 이타타 밸리의 와인 산업

남미의 기후 변화에 적응한 스마트 농업(CSA) 기술에 관한 요구 사항 조사를 실시, 예를 들면 칠레 이타타 밸리의 와인 산업으로부터는 새로운 관개 시스템과 에너지원의 요구 사항이 접수된다

전문가 데이터베이스

- 전 세계에서 **400**명 이상의 전문가가 등록. 기술 분야와 전문 분야, 사용 언어와 장소, 유상/무상의 관점에서 전문가를 검색 가능
- 전문가는 법률과 지식 재산,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서비스와 파이낸스 분야까지 확대

<실제 검색 화면>

Search the WIPO GREEN experts database

Simple Search Advanced Search

Field of expertise: *** Any ***
 Assurance and Advisory Services
 Business services
 Engineering/Technology
 Finance

Location: *** Any *** Keyword:

Disclaimer - WIPO neither endorses, supports, warrants nor expresses any opinion on an expert and on any service offered by an expert. See full Terms of Use.

<https://www3.wipo.int/wipogreen-expertsdatabase/search>

매칭을 진행하는 촉진 프로젝트

- 대상 지역과 기술 분야를 설정하여 기술제공자와 기술희망자 등이 모여서 매칭을 진행하는 이벤트를 개최. 이와 함께, 현지의 환경 기술에 대한 요구 사항을 조사.

개최 연도	대상 지역과 기술	이벤트 개최지
2015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을 대상으로 배수처리 기술에 관하여	마닐라
2016년	동아프리카를 대상으로 물과 농업에 필요한 환경 기술에 관하여	나이로비
2017년	물 분야의 환경 기술에 관하여	제네바 (WIPO 본부)
2018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대상으로 공기, 농업, 에너지, 물 관련 환경 기술에 관하여	마닐라
2019-2021년	라틴 아메리카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형 스마트농업에 대하여	라틴 아메리카 각지
2021년	인도네시아의 팜유 폐기물의 가치 향상 방안에 관하여	인도네시아

→ <https://www3.wipo.int/wipogreen/en/projects/>

8

권리자, 당사자의 자주성을 존중

- 지식 재산권 제도의 중요한 점은 권리의 거래와 행사를 권리자와 실시권자인 기업과 개인, 단체 등 당사자의 자주성에 맡기고 있다는 점이다.
- WIPO GREEN에서도 개별 거래에 대한 국제기구나 가맹국으로서의 간섭이 없다.
- 권리의 무상 제공과 저렴한 금액의 권리 개방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WIPO GREEN 현장(발취)

‘기술의 지속 가능한 전개와 적용은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때에 가능해진다. WIPO GREEN을 이용하여 체결되는 협정은 계약의 양 당사자의 책임으로 이루어진다’

9

WIPO GREEN 파트너

- WIPO GREEN의 전략 등에 대하여 논의하는 WIPO GREEN 자문 회의에 참가
- WIPO GREEN의 홈페이지에 있는 파트너 리스트에 게재
- 전 세계에서 130개 기관 및 단체가 파트너로 참가(2021년 9월 현재). 이중, 일본의 기업과 기관이 최근 2년간 급증하여 33개 기관 및 단체로 세계 최고.

일본의 WIPO GREEN 파트너 수 추이와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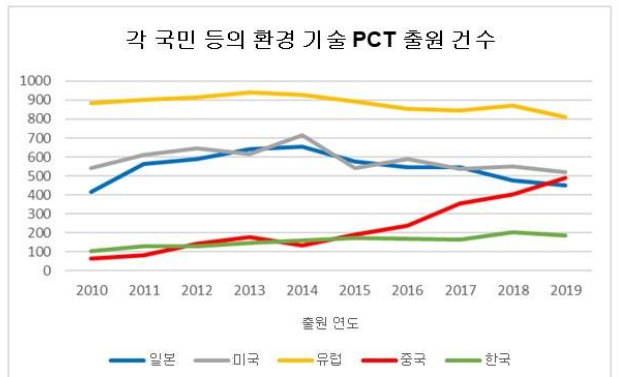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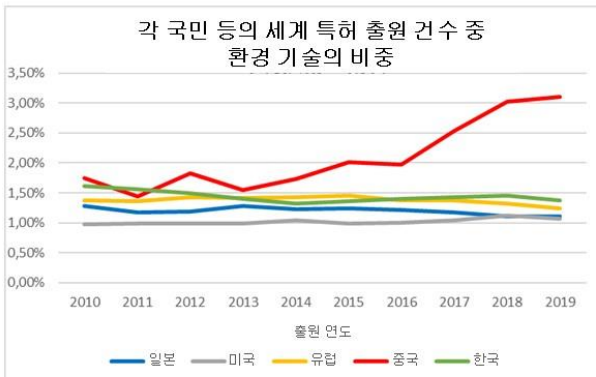
정부기관	특허청
기업	아스타유제, 카이지루시, 캐논, Global Mobility Service, 코니카 미놀타, GS얼라이언스, 시세이도, 스미토모오사카시멘트, 스미토모전기공업, 다이킨, 다이셀, 테이진, 동양알루미늄에코프록덕츠, 도요타자동차, 도요타자동차기, 파나소닉, 히타치제작소, 후지쓰, 혼다기연공업, 미쓰비시전기, 리코
단체	Team E-Kansai, 일본지적재산협회, 일본변리사회
대학 연구소	도카이국립대학기구나고야대학, 기술대학, 도쿄대학, 도호쿠대학, 마리아나대학, 메이지대학, 교분자 과학 연구소, 와세다대학 환경 종합 연구 센터
기타	쇼바아시아국제특허상표사무소, 발명추진협회 아시아태평양공업소유권센터

※2021년 9월 현재, 일본어 50음 순

환경 기술 발전에 기대

- ESG 투자 확대에 비해 환경 기술의 특허 출원은 주요국과 주요 지역에서도 저조.
- 더 많은 연구 개발과 환경 기술의 오픈 이노베이션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WIPO GREEN 정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환경 기술이란 B01D45/, B01D46/, B01D47/, B01D49/, B01D50/, B01D51/, B01D52/, B01D53/("가스 또는 증기로부터의 분산 입자의 분리" 등), B09("고체 폐기물의 처리; 오염 토양의 재생"), B65F("가정 쓰레기 또는 그와 비슷한 쓰레기의 수거 또는 이송"), C02("물, 폐수, 허수 또는 오니의 처리"), F01N("기계 또는 기관을 위한 가스류소유기 또는 배기 장치 일반; 내연 기관용 가스류소유기 또는 배기 장치"), F23G("회장로; 연소에 의해 폐기물 또는 저급 연료를 소각하는 것"), F23J("연소 생성물 또는 연소 잔재의 제거 또는 처리; 연도), G01T("원자핵 방사선 또는 X선의 측정"), E01F8/("도로 또는 횡도에서 대기 중에 전파되는 소음을 흡수 또는 반사하는 장치"), A62C("소방")

※ ※ 본 조사에서 말하는 유럽의 출원인이라,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 체코, 독일, 덴마크,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영국,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웨덴, 슬로바키아, 폴란드, 터키를 나타낸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통 테마

ESG와 지식재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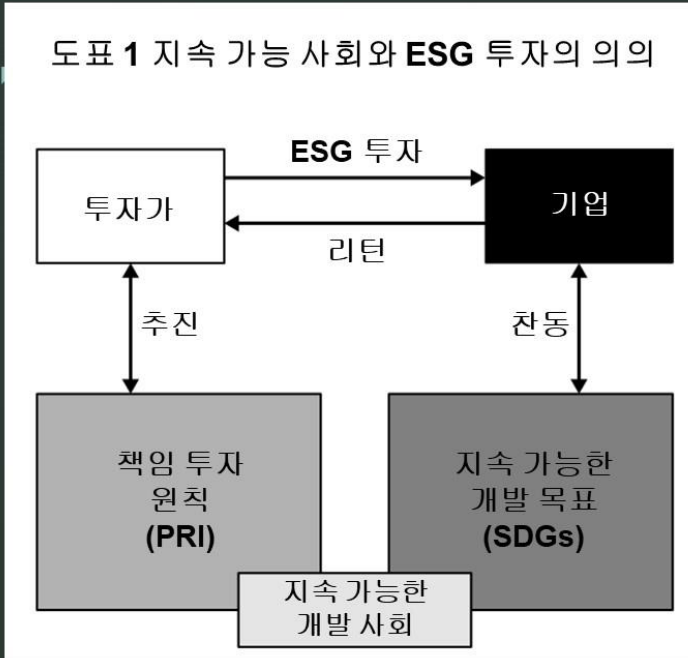
1

일본의 ESG 투자와 지식 재산

KIT 토라노몬 대학원(가나자와공업대학 대학원)
 교수 PhD
 스기미쓰 가즈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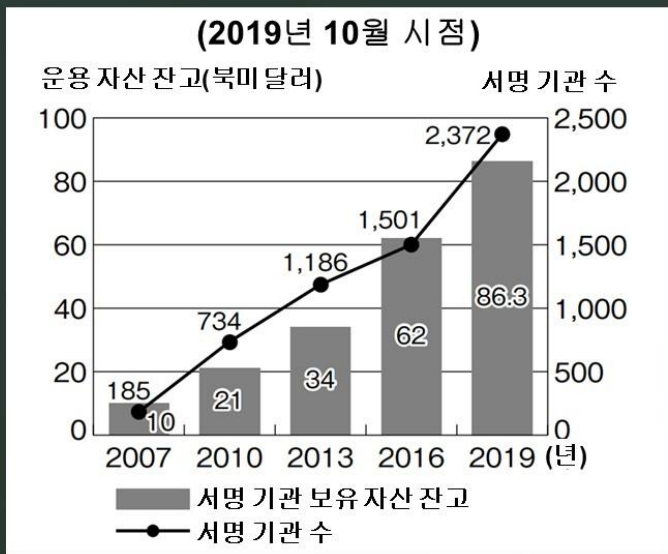
2

도표 1 지속 가능 사회와 ESG 투자의 의의



https://www.mof.go.jp/public_relations/finance/202001/202001j.pdf

도표 2 PRI 서명 기관 수 추이



https://www.mof.go.jp/public_relations/finance/202001/202001j.pdf

SDGs 관련 기술의 '가시화'와 국제 표준화의 제안

2018년에 본원이 닛케이 신문 및 내각부에서 발표한 내용

배경 2030년까지의 세계 공동 목표 UN의 SDGs(Global Sustainable Goals)

- 개발 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도 포함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세계 공동 목표.
- 경단년도 회원 기업에 대하여 경영 미비에 반영하도록 현장을 개성.

과제 SDGs의 실현에는 '기술'이 '관건'인 경우가 많은데, 현재는 SDGs 관련 기술을 어디가(주체) 어느 정도까지 가졌는지 불투명

- 현재, 세계의 '기술' 정보(학회지, 신문, 기타)의 서식 및 양식이 통일되지 않음.
- 누가 어떤 기술을 어느 정도 가졌는지를 쉽게 알 수 없다. SDGs의 각각의 목표에 대하여 어느 주체(기업, 조직), 어느 나라가 메이저 플레이어인지 알기 어렵다.

제안 특히 SDGs 목표(타겟)와의 대응 관계가 표시되어 있다면 SDGs 관련 기술이 '가시화'하여 메이저 플레이어도 알 목표연해진다

- '특허' 정보는 서식 및 기술 분류가 세계적으로 통일되어 각국 정부가 공적으로 발행하는 유일하고 가장 많은(약 8000만 건) '기술 정보'로, 무료로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DB화되어 있다.
- 특히 출원에 대하여 SDGs의 각각의 목적(타겟)과의 대응 관계를 표시(검색)가능하게 하여 '가시화'
- 특허 신청자 (출원인)의 '자기 신고'를 기초로 하여 신청자에게 SDGs에 대한 의식을 환기하는 개발 효과도 생긴다.
- '기술'이 갖춰진 일본이 선형적으로 실시하고, 그 실적을 근거로 '시스템'을 제안하여 국제적인 표준으로.

실행 가능성 ! 주의점!!

- SDGs에 대응한 것은 아니지만, 국제적인 분류(국제특허분류) 자체는 이미 존재하며 특허청은 40년 이상 표시를 해온 실적이 있음.
- 이론바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닌 '어워드'나 '인증'과는 다른 성질의 '서지적 분류'.



신규 기술 개발을 촉진시켜 SDGs 실현으로

5

- ▣ 세계 최대의 기관 투자자로 불리는 GPIF가
특허 데이터를 활용하는 움직임을 보임

**‘환경 규제로 일본 주가 상승 GPIF 추산, 특허
에 잠재 가치’ (2020년 10월 22일 닛케이신문)**

이사장이 특허 데이터 분석의 의의를 강조했다

‘GPIF 포트폴리오의 기후 변화 리스크 및 기회 분석’(2019년도 ESG 활동 보고 별책)이며 이 문헌의 53
페이지에서는 ‘특허의 품질을 평가하고, 그 평가를 기업
의 혁신적인 능력의 대체 지표’로 삼았다고 기재

6

- ▣ 기업지배구조 지침 개정

2021년 6월

기업지배구조 지침(이하, CG 지침 또는 단순히 지침)이
개정되어 **‘지식 재산’의 문구가 들어감**

→ CG 지침이 창설된 2015년 3월 이래, **사상 최초**

7

CG 지침이란 무엇인가?

= 상장 기업이 지켜야 할 ‘기업 통치’에
관한 행동 규범

유가 증권 상장 규정 436조의3

상장 기업은 본 지침을 ‘준수한다’ (Comply), 또는 ‘준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다’ (Explain)
중 하나의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음.

위반한 기업명은 공표할 수 있다(같은 규정 508조1항1호).

만약 공표된 경우에는 ‘기업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회사’라는 낙인이
찍힌 것과 같고, 결과적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어 기업 가치를
크게 손상시키게 되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도쿄증권거래소의
상장 기업에게는 사실상 기본 규정!

8

지식 재산 거버넌스

① 지식 재산 투자의 ‘감독’ (4-2②)

② 지식 재산 투자의 ‘개시’ (3-1③)

9

① 지식 재산 투자의 감독

4-2②(보충 원칙)

‘**이사회**는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 향상의 관점에서 자사의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대응에 대하여 기본적인 방침을 수립해야 한다.

또, 인적 자본 및 **지식 자산에 대한 투자** 등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를 비롯한 경영 자원의 배분과 사업 포트폴리오에 관한 전략 실행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하도록 실효성 있게 감독**해야 한다.’

10

② 지식 재산 투자의 개시

보충 원칙 3-1③

상장 회사는 경영 전략의 개시에 앞서 자사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대응을 적절히 개시해야 한다. 또, 인적 자본과 **지식 자산에 대한 투자** 등에 대해서도 자사의 경영 전략 및 경영 과제와의 정합성을 의식하면서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정보를 **개시/제공**해야 한다.

11

내각부 지식 재산 전략 본부

지식 재산 투자/활용 전략의 효과적인 개시 및 거버넌스에 관한 검토회

2021년 8월 6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공표하는 ‘가치 협창(協創)
가이던스’에 따른 형태로 특히 **지식 재산/활용 전략의
개시 및 전파의 역할**과 사내 거버넌스의 역할 등에 대하여
통찰한 **가이드라인 수립**이 주된 목적

12

도쿄대학 미래비전연구센터
연구 포럼 ‘지식 재산과 투자’

‘지식 재산 **KPI**’를 사용한 정보 개시 가능성을
주로 검토 중

정보 개시는 수평적이고 비교 가능한 ‘**KPI**’를
사용하여 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3

현시점에서의 가정(각 지표의 공통 전제)

원칙적으로 '지속적인 경쟁 우위'의 '원천'인 (=경쟁 우위성과 인과 관계가 있는) 지식 재산에 대한 투자 활동을 **가시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시. 그러기 위하여

① 경영 전략/사업 전략(특히 비즈니스 모델) 등의 설명에서 **이용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지식 재산에 대한 투자'에 관한 **CSF(및 그 KPI)**를 예시한다(*본래는 각 기업이 각자의 전략 실행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CSF를 사내에서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전제다. 따라서 예로 든 CSF(및 해당KPI)를 모두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 주의). 설명 시에는 특히 '경쟁 우위성'의 '존재' 또는 그 '지속성'의 원천인 드라이버가 무엇인지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f. 경영 전략/사업 전략(특히, 비즈니스 모델)이 **본질적으로 다른 기업 사이에서는 수평적인 비교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원칙적으로 **사업 세그먼트 단위**로 사용한다. (사업 세그먼트 단위로 개시하지 않은 경우는 개시를 요구한다)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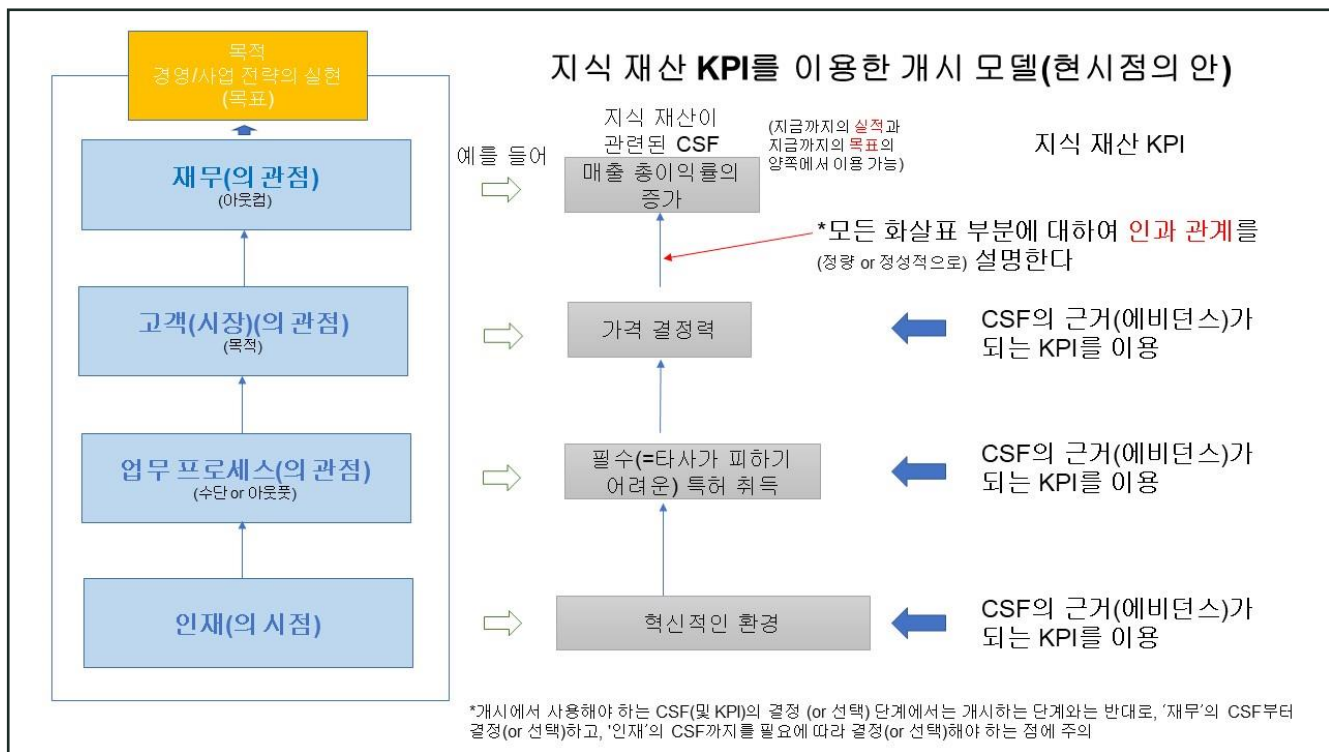
③ **시간 경과 추이**에서도 사용한다.

④ **재무, 고객(시장), 업무 프로세스, 인재의 4가지 관점**을 원칙으로 한다. 단, 비즈니스 모델 등에 따라 수정 또는 새로운 관점을 추가해도 된다.

각 관점의 CSF는 상호 연관시켜야 한다.

4가지 관점을 전제로 하면 '인재'의 CSF에서 '업무 프로세스'를 거쳐 '시장(고객)', 그리고 '재무'의 CSF까지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는 형태로 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g. 혁신적인 환경 → 중요 특허의 취득 → 가격 결정력 → 매출 총이익률의 증가)

(*자사가 사용하는 CSF(및 해당 지표)의 검토(또는 선택)의 단계에서는 개시하는 단계와는 반대로, 자사의 목적 비전 및 경영/사업 전략을 기초로 하여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CSF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4가지 관점 중, 먼저 재무 관점의 CSF부터 검토하고, 순서대로 해당 CSF에 필요한 고객(시장) 관점의 CSF, 업무 프로세스 관점의 CSF, 인재 관점의 CSF라는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이상입니다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의 특허 관리와 분쟁의 국제적 해결

Patent Portfolio Management and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천원쉬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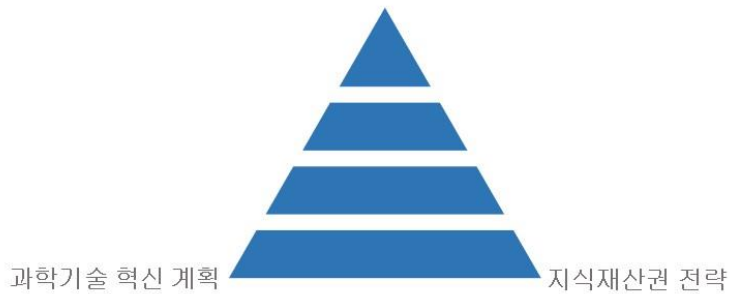
wxchen@saelinklaw.com

202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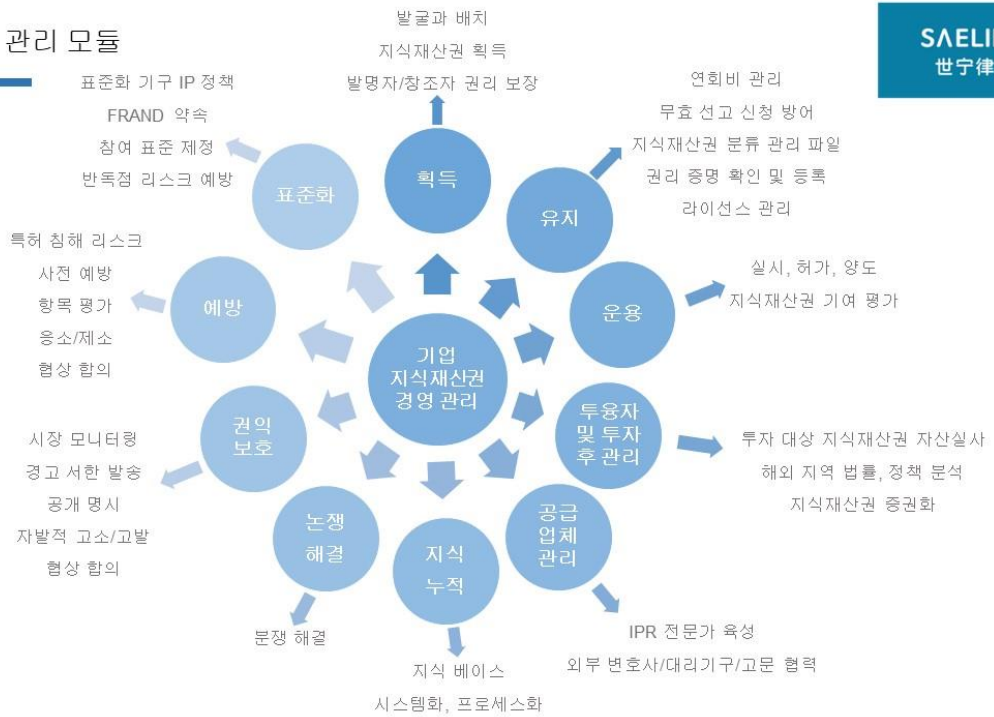
기업 전략 계획

SAELINK LAW
世宁律师事务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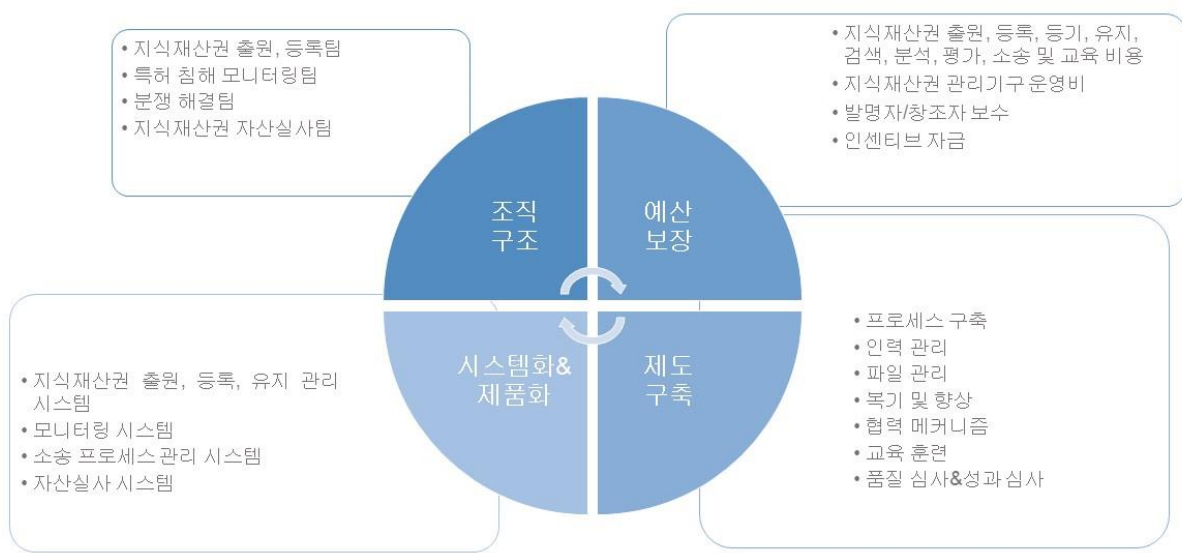
경영 발전 로드맵



지식재산권 관리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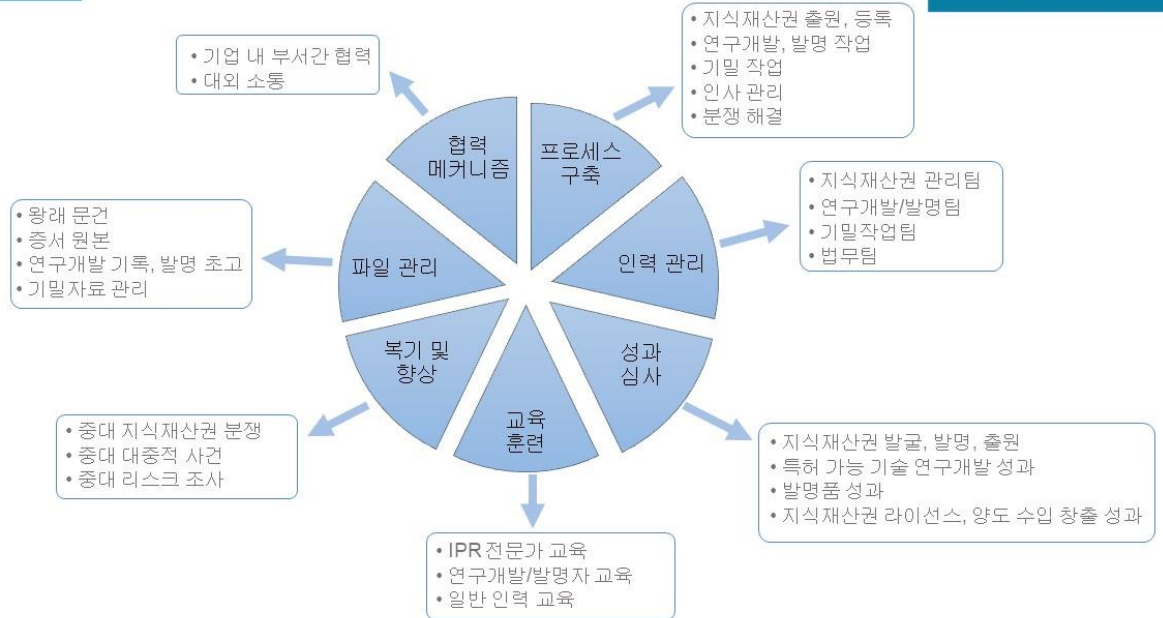


지식재산권 관리 체계 구축



지식재산권 관리 제도 구축

SANELINK LAW
世宁律师事务所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력의 현저한 향상--징벌적 손해배상

SANELINK LAW
世宁律师事务所

2018년 이전	《특허법》(2008년 개정) 제65조: 징벌적 손해배상 아직 없음. 법원이 정한 배상액은 1만 위안 이상 1백만 위안 이하.
2018년 11월 5일	시진핑 총서기는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에서 “외자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외국 상사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특히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법에 따라 처벌하고, 지식재산권 심사 품질과 심사 효율성을 제고하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다”고 지적함.
2020년 10월 17일	《특허법》(2020년 개정) 제71조: 고의로 특허권을 침해하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 1배 이상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함. 법원이 정한 배상액은 3만 위안 이상 5백만 위안 이하.
2021년 1월 1일	《민법전》(2021년 시행) 제1,185조: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로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그에 상응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한이 있음.
2021년 3월 3일	최고인민법원이 《지식재산권 침해 민사 사건 재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을 발표함.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력의 현저한 향상--의약품 특허 연계제도 구축

SAELINK LAW
世宁律师事务所

- 2017년 10월 8일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의약품·의료기기 혁신 장려를 위한 심사·허가 제도 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제16조에서 “**의약품 특허 연계제도 구축**”을, 제17조에서 “**의약품 특허 기한 보상제도 시범운영 시행**”을 명시함.
- 2019년 11월 24일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제4조에서 “**의약품 특허 연계제도, 의약품 특허 기한 보상제도 구축 모색**”을 명시함.
- 2020년 10월 17일 《특허법》(2020년 개정) 제42조에 **신약발명특허에 대한 특허 보상 기한 메커니즘**을, 제76조에 **의약품 특허 출시 심사·허가 과정 중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추가함.
- 2021년 7월 4일 국가의약품관리감독국, 국가지식재산권 국은 공동으로 《의약품 특허 분쟁 조기 해결 메커니즘 실시방법(시행)》을 발표하고, 동시에 “중국 출시 의약품 특허 정보 등록 플랫폼”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함.
- 2021년 7월 5일 국가지식재산권 국은 《의약품 특허 분쟁 조기 해결 메커니즘 행정 판결 방법》을 발표함.

SEP 글로벌 요율 분쟁 관할

SAELINK LAW
世宁律师事务所

OPPO의 SHARP 소송건

최고인민법원 (2020)최고법지민할중 517호

사건 소개

OPPO사는 SHARP의 요구에 응해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 과정에서 **SHARP는 일본, 독일 등지에서 OPPO사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OPPO사는 SHARP가 일방적으로 협상 범위 내의 특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금지 명령을 신청한 것이 **FRAND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해, **바로 광둥성 선전시 중급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관련 SEP의 글로벌 요율에 대해 판결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행위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SHARP는 관할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SHARP는 최고인민법원에 항소했고, 최고인민법원은 (2020) 최고법지민할중517호 사건에 대해 1심 판결 유지 결정을 내렸다.

SEP 글로벌 요율 분쟁 관할

SANELINK LAW
世宁律师事务所

OPPO의 SHARP 소송건

최고인민법원 (2002)최고법지민할중 517호

쟁점: 원심 법원은 사건 관련 표준필수특허의 글로벌 라이선스 요율에 대해 판결을 내릴 권한이 있는가?

최고인민법원--“적절한 연계” 원칙

중국 국내에 주소와 대표기구가 없는 피고가 제기한 해외 민사 분쟁 사건에 대해, 중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지 여부는 해당 분쟁이 중국과 적절한 연계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분쟁은 계약성을 더욱 띄는 특수 유형의 분쟁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분쟁이 중국과 적절한 연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특허 승인지, 특허 실시지,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지 또는 특허 라이선스 협상지, 특허 라이선스 계약 이행지, 압수 가능 또는 집행 가능한 재산 소재지 등이 중국 영내에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고, 상기 지역 중 하나가 중국 영내에 있다면, 해당 분쟁은 중국과 적절한 연계가 있으므로, 중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SEP 글로벌 요율 분쟁 관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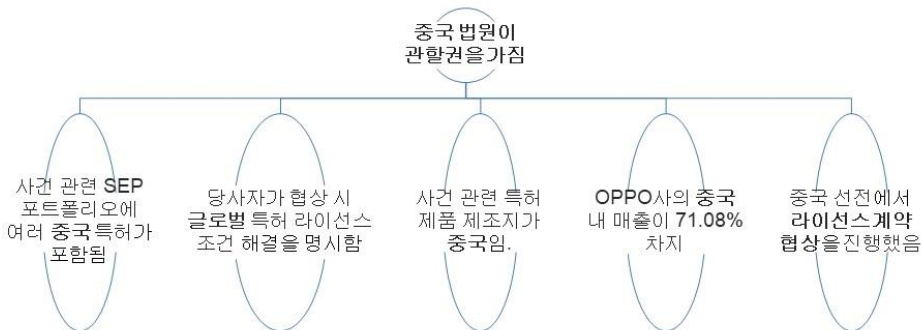
SANELINK LAW
世宁律师事务所

OPPO의 SHARP 소송건

최고인민법원 (2002)최고법지민할중 517호

쟁점: 원심 법원은 사건 관련 표준필수특허의 글로벌 라이선스 요율에 대해 판결을 내릴 권한이 있는가?

최고인민법원--“적절한 연계” 원칙



SEP 글로벌 요율 분쟁 병행 소송 금지 명령



CONVERSANT의 화웨이 소송건
(2019)최고법지민중 732, 733, 734호

사건 소개

2017년 7월, CONVERSANT는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화웨이를 영국 법원에 고소했다. 2018년 1월, 화웨이는특허권 미침해 확인 및 표준필수특허 사용료 확인을 이유로 CONVERSANT를 난징시 중급 인민법원에 반소했다. 2018년 4월, CONVERSANT는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표준필수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 화웨이가 침해를 중단하고 손해 배상할 것을 요청했다. 독일 법원이 1심 판결을 내렸을 때, 중국에서 쌍방의 미침해 확인 및 표준필수특허 로열티 확인 3안은 2심 재판 단계에 있었고, 화웨이는 최고인민법원에 행위보전을 신청했다. 최고인민법원은 다음 날 행위보전 판결을 내렸다.

CONVERSANT가 화웨이를 고소함	화웨이가 CONVERSANT를 고소함	CONVERSANT가 화웨이를 고소함	난징시 중급 인민법원이 1심 판결을 내림	독일 법원은 1심에서 화웨이가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함	
특허권 침해	미침해 확인 및 SEP 요율 확인	표준필수특허 침해	CONVERSANT가 최고인민법원에 상소함	화웨이는 최고인민법원에 행위보전("집행금지 명령")을 신청함	최고인민법원이 행위보전 판결을 내림
영국 법원	난징시 중급 인민법원	독일 법원			
2017년 7월	2018년 1월	2018년 4월	2019년 9월	2020년 8월 27일	2020년 8월 28일

SEP 글로벌 요율 분쟁 병행 소송 금지 명령



CONVERSANT의 화웨이 소송건
(2019)최고법지민중 732, 733, 734호

쟁점 (1): 해외 법원의 판결 집행을 신청할 경우 중국 소송에 미치는 영향

최고인민법원: 첫째, 양국 소송 당사자는 동일하다. 둘째, 양국 소송은 모두 관련 표준필수특허 로열티 계약이 FRAND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관련 있고, 재판 대상이 일부 겹친다. 셋째, 행위 효과 관점에서 볼 때, 독일 법원의 판결을 집행하면 중국에서 재판 중인 3안을 방해하고, 중국 3안의 재판과 판결은의미를 잃을 수 있다.

쟁점 (2): 행위보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지 여부

최고인민법원: 일단 독일 법원의 판결이 집행되면 화웨이 및 그 독일 계열사에는 2가지 선택지뿐이다. 하나는 독일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CONVERSANT의 원심 법원이 결정한 18.3배의 높은 요율을 수용하고 합의해야 하며, 중국 소송으로 구제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다. 그 결과, 중국 소송의 판결은 의미를 잃고 사실상 집행하기 어려워 질 것이고, 화웨이 및 그 계열사의 손실은 만회하기 어려울 것이다.

SEP 글로벌 요율 분쟁 병행 소송 금지 명령

SAELINK LAW
世宁律师事务所

CONVERSANT의 화웨이 소송건
(2019)최고법지민중 732, 733, 734호

쟁점 (3): 신청인과 피신청인 관련 이익에 대한 합리적 질충

최고인민법원: 행위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화웨이는 독일 시장에서 퇴출당하거나 높은 라이선스 요율을 강요받고, 중국 법원의 법적 구제를 포기당하게 되어 만회할 수 없는 손실을 입게 된다. 그러나 행위보전 조치를 취하면, CONVERSANT에 대한 손해는 단지 독일 법원 1심 판결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일 뿐이고, CONVERSANT의 독일 내 다른 소송 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CONVERSANT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다. 또한, 화웨이는 이미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했다.

쟁점 (4): 공공 이익

최고인민법원: 중국 소송과 독일 소송은 주로 화웨이와 CONVERSANT의 이익과 관련이 있고, 공공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

쟁점 (5): 국제예양 요소

최고인민법원: 사건 접수 시간 선후, 사건 관할 적절성 여부, 해외 법원 재판과 판결에 미치는 영향의 적절도 여부 등 국제예양 요소를 고려한다. 중국 1심 법원의 본 사건 접수 시간이 먼저이다. 행위보전 조치를 취한다면 독일 법원 판결의 집행을 유예할 뿐이며, 독일 법률의 효력을 약화시키지 않고, 독일 법원에 대한 영향은 여전히 적절한 범위 내에 있다.

THANKS

SAELINK LAW
世宁律师事务所

주소

베이징시 천위먼 남따제 7번지
A블록 19층

전화

+8610 6526 5098

이메일

wxchen@saelinklaw.com

홈페이지

www.saelinklaw.com

ESG의 법적 쟁점에 따른 기업의 효과적 대응방안

2021. 10. 26.

법무법인(유) 올촌
윤용희 변호사

Copyright 2020 Yulchon LLC.



목 차



- I. ESG 경영 체계 수립의 필요성
- II. ESG 관련 규정/제도의 이해
- III. 올촌 ESG연구소의 조직 및 서비스 분야·실적

I. ESG 경영 체계 수립의 필요성

1. ESG는 기업의 존재론에서 출발한 개념으로서 뿌리가 깊음



-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의미**
 - 기업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사회/거버넌스에 관한 요소(비재무 요소)
 -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혼용되어 사용되나, “E/S/G 규제” 등 표현 고려할 때, ESG가 더 적절함
- **ESG 규제, ESG 투자, ESG 경영 등 각 개념을 구별해서 사용함이 적절함**
 - **ESG 규제:**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에서 E,S,G 분야 각 근거 법령에 따른 규제 (전통적 정부 규제)
 - **ESG 투자:** 투자자와 기업 간의 관계에서 ESG 요소까지 고려하여 투자 의사결정하는 방식
 - **ESG 경영:** ESG 규제 및 ESG 투자라는 측면까지 모두 참작하여, **ESG 요소를 적극 고려하는 기업 경영 방식**
 - **ESG:**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을, 투자자가 어떻게 선별할 수 있는가의 문제(투자 리스크 평가 문제)
 - ⇒ 이해관계자(투자자, 고객사 등)의 요청: “기업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재무 요소(숫자와 친하지 않은 요소)를 데이터(수치)에 기반하여 검증/공개/설명해 달라”
 - ☞ **데이터 기반 경영: 과거 “감”에 의존해서 평가했던 요소를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증/평가/설명하는 경영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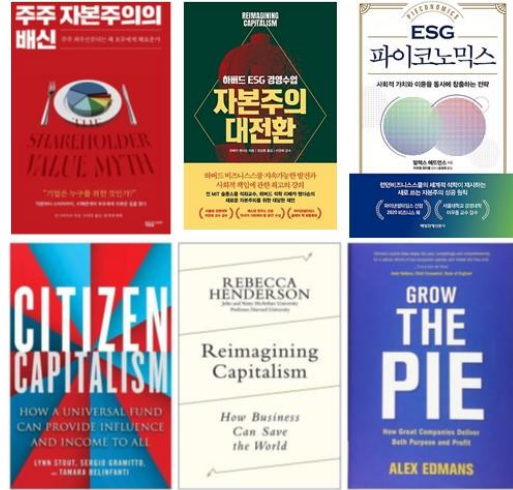
1. ESG는 기업의 존재론에서 출발한 개념으로서 뿌리가 깊음

기업의 존재론(주주자본주의 vs 이해관계자자본주의) → 주주이익 극대화 문제로 인한 ESG 관심 증대(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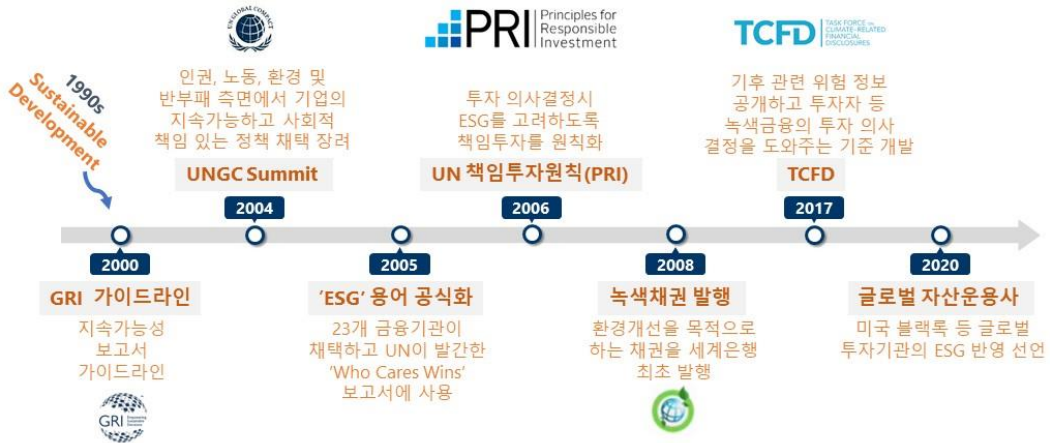
기업: 주인(주주)를 대리한 이사회/경영진이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장치 - 기존 주류 재무경제학적 관점

- 주주이익극대화 원칙(The Friedman doctrine): Friedman (1970)
- 주인-대리인 이론: Jensen and Meckling (1976)



1. ESG는 기업의 존재론에서 출발한 개념으로서 뿌리가 깊음

기업의 존재론(주주자본주의 vs 이해관계자자본주의) → 주주이익 극대화 문제로 인한 ESG 관심 증대(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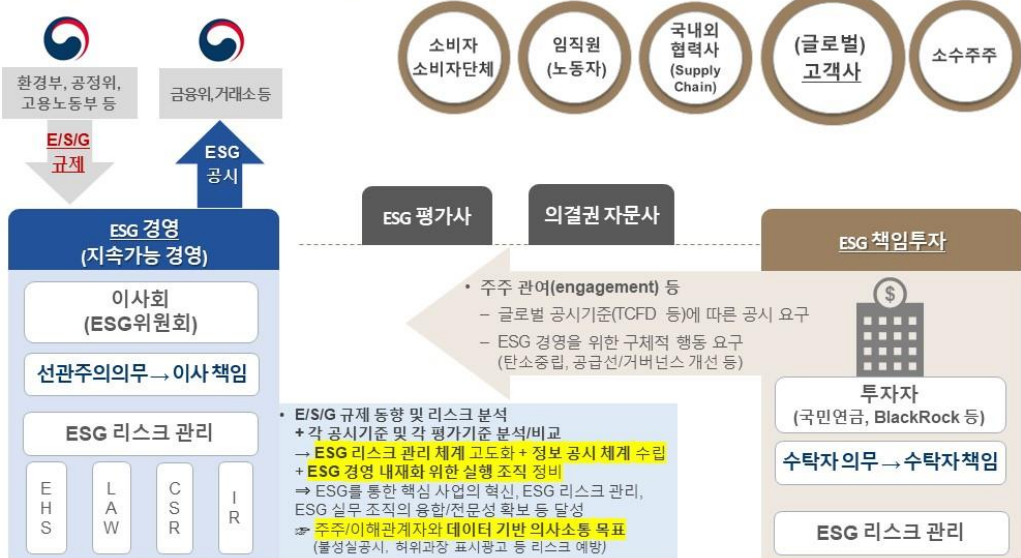


출처: GRI, UNGC, UN PRI, World Bank, TCFD 홈페이지 내용 참조

1. ESG는 기업의 존재론에서 출발한 개념으로서 뿌리가 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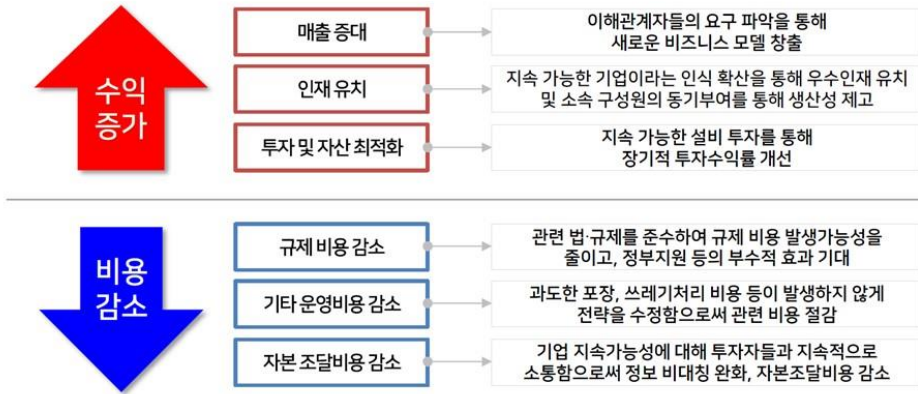


2. ESG 운동장에서 Key Player로 활동하지 않으면 퇴출되는 시대



2. ESG 운동장에서 Key Player로 활동하지 않으면 퇴출되는 시대

한국 정부: ESG 개선은 증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사회적 가치에도 기여한다는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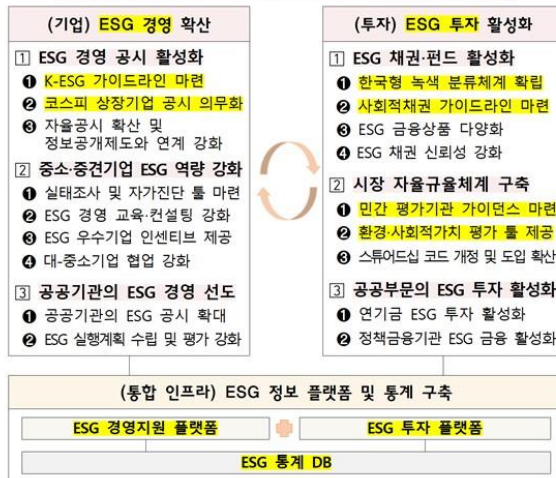
* 출처 : Five ways that ESG Creates Values(McKinsey Quarterly, 2019), How ESG Affects Equity Valuation, Risk, and Performance(MSCI, 2019)

출처: KBCSD 주관 금융위원회 발표자료(21. 2. 25.)

3. 한국 정부는 강력한 ESG 제도를 빠르게 도입하고 있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 성장기반 확충

“친환경·포용·공정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ESG 인프라 확충 방안” 발표
(‘21. 8. 26. 관계부처 합동)



3. 한국 정부는 강력한 ESG 제도를 빠르게 도입하고 있음

【 ESG 정보 플랫폼 구축(안) 】



강력한 ESG 제도/규정으로 인해 공개되는 ESG 정보의 양과 질의 증가
 ⇒ 정부/이해관계자의 모니터링 강화 + 집단소송/징벌적손해배상/디스커버리 제도
 ⇒ 기업이 ESG 소송(부당표시광고, 불성실공시 등)을 당할 리스크가 증가함

3. 한국 정부는 강력한 ESG 제도를 빠르게 도입하고 있음

- 공공영역에서의 ESG 요소 의무적 고려 관련 논의 - 이른바 "ESG 4법" 추진 움직임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공영역에서 ESG 요소를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하는 이른바 "ESG 4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공공물자조달, 공공기관운영 및 평가 등 공공영역 전반에서 ESG 요소를 고려 반영하도록 함

관련 법률	현행	개정안
국민연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금 관리 및 운용의 목적은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과 수익의 최대 증대(국민연금법 제102조 제1항) 기금관리 및 운용 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ESG 요소를 임의적으로 고려 가능(국민연금법 제102조 제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금 관리 및 운용의 목적을 "제도 또는 기금의 지속가능성"으로 변경 기금관리 관리 및 운용 시 ESG 요소 고려 의무화
국가재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ESG 고려에 관한 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금의 자산운용지침에 ESG 요소 고려사항을 추가하고 지침의 준수 여부를 기금운용 평가에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ESG 요소 고려 의무화
조달사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달 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ESG 가치를 임의적으로 반영 가능(조달사업법 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달절차에서 ESG 가치 반영 의무화
공공기관운영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ESG 고려에 관한 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ESG를 고려하여 경영활동을 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함

4. 전통적 준법 리스크의 확대/강화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중요함

규제 리스크 유형	회사	위반행위	결과
환경안전 환경법 위반	O사 등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 사건	과징금, 임직원 실형
	B사 등	자동차 배출가스 부정 인증, 배출가스 조작	과징금 583억원/벌금 260억원, 임직원 실형
	P 사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행정처분(조업정지)
	Y사	폐수 무단 배출, 폐수 불법 처리	행정처분(조업정지)
공정거래 담합	C사 등	운송업자들의 철강 운송 입찰담합	시정명령, 과징금 400억원, 형사고발
	H사 등	철강제조사업자들의 철근 가격 담합	시정명령, 과징금 1,194억원, 형사고발
	H사 등	철강제조사업자들의 강판 가격 담합	시정명령, 과징금 1,580억원, 형사고발
하도급법 위반	H사	수급사업자에 대한 경제적이의 제공 요구	시정명령, 과징금 53억원, 형사고발
	H사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탈취 및 유용	시정명령, 과징금 3.82억 원, 형사고발
부당지원	H사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시정명령, 과징금 128억원, 형사고발
...			

▶ 준법 리스크(Compliance Risk)로 인한 행정책임, 형사책임, 민사책임, 평판 추락 등 막대한 피해

4. 전통적 준법 리스크의 확대/강화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중요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예상되는 변화

구분	결과/시사점
1. 형사처벌 범위 확대 - 경영책임자	•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복 적용
2. 법정형 및 양형의 강화	• 중대재해처벌법: (사망의 경우) 1년 이상 • 산안법: (사망의 경우) 1년 ~ 2년 6개월
3. 징벌적 손해배상 - 손해액의 최대 5배	• 유족과의 합의난항 → 형사 사건에 영향
4. 산업안전 근로감독 강화	• 본사에 대한 근로감독 가능
5. 언론 & 시민단체 & 노동계 관심	• 사건 및 분쟁의 발생 자체가 위험요소
6. ESG 경영 가치 하락	• 기업의 생존 문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

단순한 형사 책임 문제가 아닌 “종합적 위기 대응”의 문제

4. 전통적 준법 리스크의 확대/강화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중요함

과징금제도 개편, 사적 집행 확대 등 → 준법 리스크는 기업의 생존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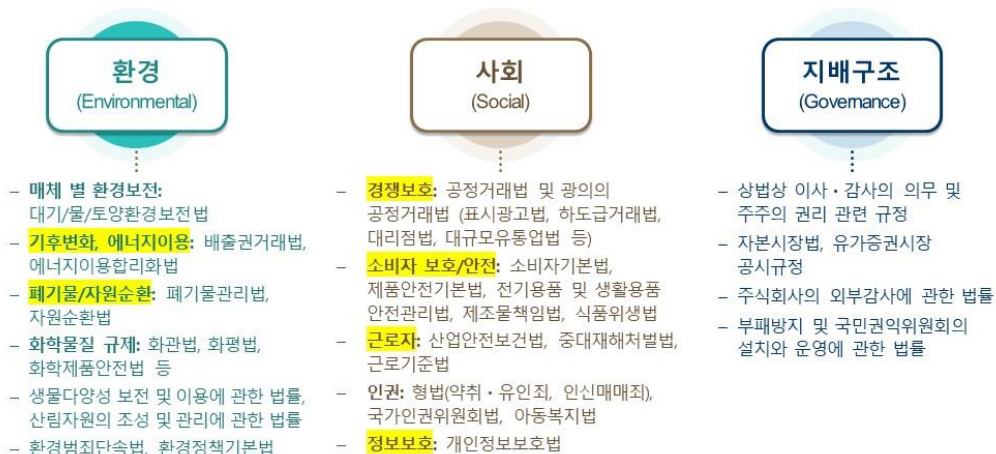
구분	내용	비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일반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폭 확대(법무부 2020. 9. 29. 입법예고); 2011년 하도급거래법에 도입된 이래 환경보건법, 제조물책임법, 공정거래법 등 약 20개 법률에 이미 도입 → 향후 상법 개정되면 전 분야에 일괄 도입 예정	
집단소송제도 일반화	집단소송제 대폭 확대(2020. 9. 28. 법무부 입법예고); 향후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통과되면, 집단소송제 일반화에 더해 소송전 증거조사(한국형 Discovery)도 도입 예정	*하급심 판결문까지 공개하는 법률안 발의
E/S/G 규제 위반행위 처벌 강화 - 매출액 기반 과징금 등	환경범죄 업체 - 매출액의 5% 이내 금액 및 정화비용을 과징금으로 부담 환경 리니언시(leniency) 제도 도입: 위반사실을 알게 된 즉시 자진하여 신고/시정한 자는 과징금 감면 가능	환경범죄단속법
	화학물질의 제조/수입 관련 매출액의 5%이내 과징금 부과 가능	화평법 17조의2
	제조업 등의 폐수배출시설 관련 조업정지 같음하여 매출액의 5%이내 과징금 부과 가능	물환경보전법 43조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이산화탄소 1톤당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10만원 한도)의 과징금 부과 가능	배출권거래법 33조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하는 경우 처리이익의 최대 3배 이하의 과징금 부과 가능	폐기물관리법 48조의5



5. 준법 리스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ESG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필요

ESG “요소” 관련 각 국내 법령상 리스크를 식별/대응하는 것이 ESG 리스크 관리체계의 출발임

ESG “요소” 관련 주요 국내 법령



6. 그린워싱 등 증가하는 ESG 관련 소송 리스크에 대한 인식/대응이 필요함

ESG소송의대표 유형

제품 표시, 공시 자료에 기재된 ESG정보의 오류누락을 이유로 한 소송

- 환경 관련 보증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재활용 기부 관련 표시 등의 오류 관련 소송
- 공급업체 소속 노동자의 인권 실태에 관한 표시 누락 관련 소송
- 공시 보고서, 홈페이지, 마케팅 자료상 'ESG 정보의 허위'를 이유로 한 소송

공시자료, 제품표시 등에서 ESG 속성을 부각시킬 때, 표시광고법 등에 비추어 법 위반 가능성 없도록 충분한 사전 검토 필요
 ⇒ R&R 개선 및 ESG 리스크 관리체계 수립(법률전문가의 사전 검토 프로세스 포함)

불성실공시에 따른 집단소송

- Securities Exchange Act 위반 소송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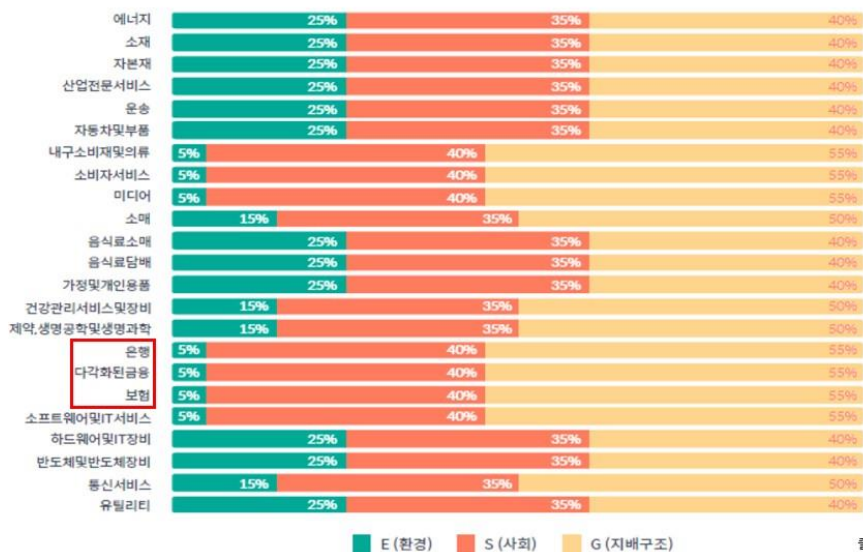
불성실공시 처벌 규정 존재
 ① 회사의 책임(발정, 제재금, 매매거제 금지 등) 자본시장법 등
 ② 경영진의 책임: 상법 399조, 401조
 ⇒ R&R 개선 및 ESG 리스크 관리체계 수립(법률전문가의 사전 검토 프로세스 포함)

ESG 요소 관련 기업의 불법행위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한 소송

- 인권환경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소송,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소송 등

Sustainable Corporate Governance: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 등을 예방하고자 공급망 실사 의무 강제
 → 글로벌 공급망에 걸쳐 ESG 부정 요소에 대해 실시하고 이를 예방해야 하는 법적 의무 부과 예상
 ⇒ 준법을 넘어 ESG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수적

[참고] 산업별 각 ESG 평가지표의 비중



출처: 서스틴베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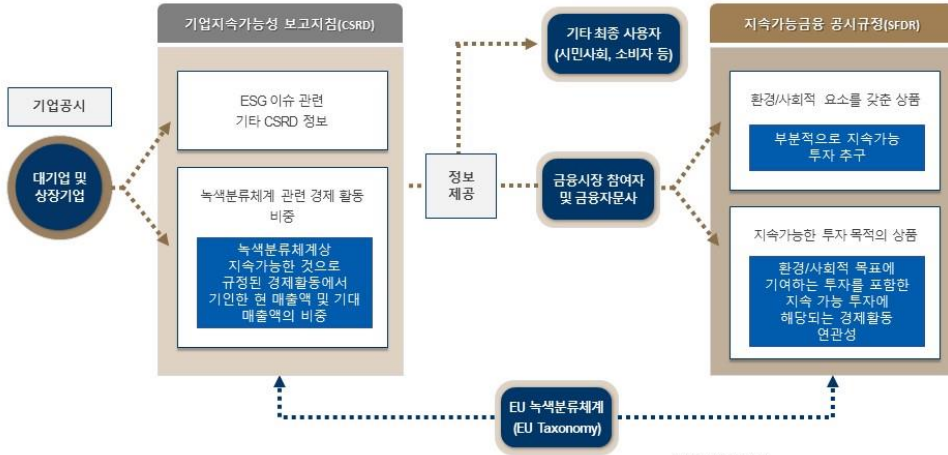
III. ESG 관련 규정/제도의 이해

한국은 유럽의 강력한 ESG 제도를 빠르게 따라가고 있음

	EU 	한국 
녹색(산업) 분류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Taxonomy Regulation -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에 대한 분류체계(20. 7.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책임투자의 지원(환경기술산업법 10조의4)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녹색분류체계)를 개발 중 - 기업의 환경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 평가체계를 구축할 예정
녹색채권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Green Bond Standa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공개(20. 12.) - 환경부/ 금융위/ 환경산업기술원/ 거래소
금융회사 공시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SFDR) - EU 역내의 연기금, 자산운영사 및 해당 금융상품 관련 ESG 정보 공시에 관한 규정(21. 3.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 정보 공개 가이드스(21. 1. 거래소 가이드스)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5년부터 단계적 의무화 - 지배구조보고서: '19년부터 단계적 의무화 • 환경정보공개시스템: '22년부터 단계적 의무화 (환경기술산업법 10조의4)
ESG 정보 공시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NFRD) →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 • Initiative on Sustainable Corporate Governance 	

한국은 유럽의 강력한 ESG 제도를 빠르게 따라가고 있음

EU 녹색분류체계가 지속가능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



1. ESG 책임투자 원칙에 관한 규정

(1) 국제사회에서의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의 확산

• 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PRI): UN 책임투자원칙

- UN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FI) 및 UN 글로벌콤팩트(Global Compact)가 2006. 4. 글로벌 기관투자자들과 함께 UN 책임투자원칙을 발표
- 연기금 등이 수탁자로서 투자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투자 대상 기업의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ESG 등 비재무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
- ⇒ PRI 서명 기관은 3,634개이고(’21. 1. 기준; ’19. 상반기 대비 53% ↑), 19개 국가에서 수탁기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19. 기준)

- Principle 1: We will incorporate ESG issues into investment analysis and decision-making processes.
- Principle 2: We will be active owners and incorporate ESG issues into our ownership policies and practices.
- Principle 3: We will seek appropriate disclosure on ESG issues by the entities in which we invest.
- Principle 4: We will promote acceptance and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s within the investment industry.
- Principle 5: We will work together to enhance our effectiveness in implementing the Principles.
- Principle 6: We will each report on our activities and progress towards implementing the Principles.

1. ESG 책임투자 원칙에 관한 규정

(1) 국제사회에서의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의 확산

• ESG 책임투자 원칙의 최근 동향

- 블랙록(BlackRock, 세계 1위 자산운용사)
 - (i) 2019년 초 기업이 단순히 **주주(Shareholder)의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직원, 고객,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천명
 - (ii) 투자대상기업들(한국 대기업 포함)에게 보낸 2020년 CEO 연례서한에서 **기후변화를 경영전략에 반영하고 이사회 내 관리방안을 수립해 2020년 말까지 공개할 것을 요청** (Larry Fink's 2020 letter to CEOs)
- 최근 기관투자자(연기금, 자산운용사 등)는 투자대상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초점을 맞추던 방식에서 벗어나 **비재무적 성과를 고려하여 투자 대상의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이 과정에서 **투자 대상 기업의 ESG 요소를 검토·분석**
- ⇒ **투자대상회사 선별 및 투자 의사결정, 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등에 있어서 ESG 요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 **ESG 정보에 대한 공개 요구 증가**

1. ESG 책임투자 원칙에 관한 규정

(2) 국내에서의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원칙” 도입

• 2016. 12. 한국 스투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제정

- 스투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을 강조하는 원칙
 - 기관투자자가 투자 의사 결정 및 자산 운용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함
 - ⇒ 149개 기관에서 참여(21. 1.말 기준)
- 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 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 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 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 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범위에 **ESG 요소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개정 검토 중

1. ESG 책임투자 원칙에 관한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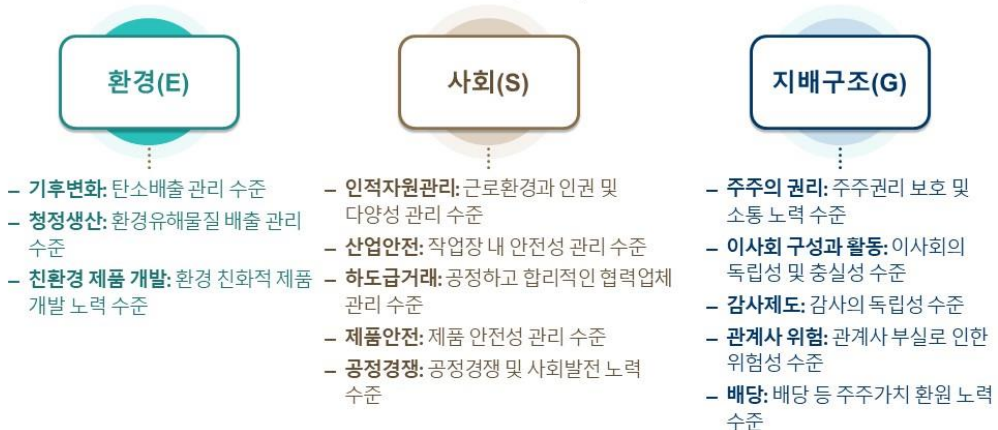
(2) 국내에서의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원칙” 도입

-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원칙의 근거 규정
 -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 ④ 제2항 제3호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한** 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신설 2015.1.>
 - ✓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4항의 개정 이유:
 - “대규모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기금이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공공자금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수익률도 제고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사회책임투자의 근거를 마련하고,”
 - 2018. 7. “스튜어드십 코드(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
 - 2019. 12. 스튜어드십 코드에 기반한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제정: 주주활동 대상기업의 선정에 있어 ESG 사항을 명시
 - ⇒ 2021년부터 국내 주식채권에 대한 투자 결정 시 **ESG 기준**을 적용하고, 2022년까지 **ESG 투자**를 기금 전체 자산의 약 5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

1. ESG 책임투자 원칙에 관한 규정

(2) 국내에서의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원칙” 도입

- 국민연금의 ESG 평가지표가 포함하고 있는 요소 (Source: NPI)



2. ESG 공시 제도에 관한 규정

(1) ESG 공시 제도에 관한 “국제 동향”

- “ESG 정보 공개 가이드نس”(21.1. 거래소 가이드نس)가 제시한 주요 정보공개표준

- (1) Global Reporting Initiative (GRI)
- (2) 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 (IIRC)
- (3)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SASB)
- (4)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

⇒ ESG 정보공개표준통합 논의 진행중

★ 국제회계기준(IFRS) 내 지속가능성보고 기준 정립 논의 vs ESG 정보공개표준 기관들 간 표준 설정 논의 ★

-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Recommendations (“17.7)

-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G20의 요청(15.4)
 - 금융안정위원회(FSB)는 TCFD(기후변화관련 재무정보 공개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설립(15.12)
 - ⇒ 투자자/대출기관/보험회사의 기후변화위험평가에 필요한 정보의 공개를 위한 권고안 마련(17.7)
 - ⇒ 70개국에서 정부, 기업 등 1,500여개 기관 가입(한국은 환경부, 거래소, 신한·KB 등 15개 기관 가입)

- BlackRock CEO Larry Fink's 2020 letter to CEOs

- (1) publish a disclosure in line with industry-specific SASB guidelines
- (2) disclose climate-related risks in line with the TCFD's recommendations

2. ESG 공시 제도에 관한 규정

(1) ESG 공시 제도에 관한 “국제 동향”

- 유럽연합(EU)의 ESG 공시 제도: “의무공시제도” 도입

-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NFRD) (Directive 2014/95/EU):

European Commission: 2014년 기업의 비재무 정보의 공개에 관한 지침을 제정(2018년부터 시행)

(유럽 회원국은 대부분 EU의 NFRD를 따라 법제화)

→ 역대 근로자 수 500인 ↑, 자산총액 2,000만 유로(or 순매출 4,000만 유로) ↑ 기업에 대해 ESG 정보(환경, 사회, 노동, 인권, 반부패 등) 공개를 의무화(Comply or Explain 방식)

✓ 해당 문제 관련 정책, 결과 및 위험을 설명하고, 기업이 시행하는 준수 절차(due diligence processes)뿐만 아니라 공급업체/하청업체 관련 준수 절차에 관한 정보를 포함

✓ (1) EU 내 현지 법인이나 공장을 설립한 한국 기업: 적용 대상

(2) EU 내 기업과 거래 관계가 있는 한국 기업: 해당 기업으로부터 ESG 정보 제공을 요청받을 수 있음

- Initiative on Sustainable Corporate Governance (지속가능한 기업지배구조 법안)

✓ EU 역내기업의 자발적 공급망 실사 규정(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이 있으나 미흡하다고 판단

→ 공급망(value chain)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 환경 문제 등을 예방하고자 EU 기업의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 의무를 강제하는 내용의 법률안 (EU집행위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음)

⇒ 글로벌 공급망에 걸쳐 ESG 부정 요소에 대해 실사하고 이를 예방/완화해야 하는 법적 의무 부과 예상

- 미국의 ESG 공시 제도: 기본적으로 아직 “자율 공시”에 의존

2. ESG 공시 제도에 관한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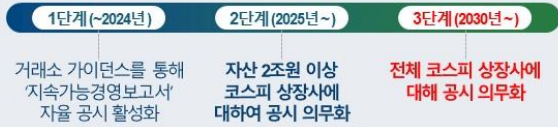
(2) ESG 공시 제도에 관한 “국내 동향” - ESG 자율 공시 활성화 및 의무 공시 확대

·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발표(금융위원회, 2021. 1. 15) : ESG 책임투자 기반 조성

(1) 기업지배구조보고서(“G” 보고서)의 공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예정



(2) 지속가능경영보고서(“ES” 보고서)에 대한 거래소 자율 공시 활성화 및 단계적 의무화 추진 예정



2. ESG 공시 제도에 관한 규정

(2) ESG 공시 제도에 관한 “국내 동향” - ESG 자율 공시 활성화 및 의무 공시 확대

·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발표(금융위원회, 2021. 1. 15)

- ESG 책임투자기반 조성을 위해서, (i)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화 확대 방안 및 (ii)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활성화 방안 발표

*기업공시제도: 상장기업 등으로 하여금 증권 발행/유통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
→ ESG 사항 공시는 현재 사업보고서(의무), 거래소 지배구조보고서(자율/의무) 및 지속가능보고서(자율) 등을 통해 진행

- 기업지배구조보고서(“G” 보고서) 의무화 확대:

거래소는 2017.3.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자율적으로 설명 및 공시하는 방식으로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도입

→ 2019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대규모 상장법인”)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의 의무적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거래소에 신고/공시(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4조의2)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 공시 대상의 단계적 확대: 2026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

연도	2019년	2022년	2024년	2026년
의무 대상 기준	(코스피상장사 중) 2조원 이상	1조원 이상	5천억원 이상	전체 코스피상장사
대상 기업 수 (‘20년 기준 추정치)	• 211개	• 301개	• 764개	• 800개

2. ESG 공시 제도에 관한 규정

(2) ESG 공시 제도에 관한 “국내 동향” - ESG 자율 공시 활성화 및 의무 공시 확대

•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발표(금융위원회, 2021. 1. 15)

- 지속가능경영보고서(“ES”보고서) 공시 활성화:

ESG 관련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대한 거래소 자율 공시를 활성화하고, 단계적으로 의무화 추진 예정
 *환경 관련 기회·위기요인대응계획, 노사관계·양성평등 등 사회이슈관련 개선노력 등을 담은 보고서

1단계(~2024년)	거래소 가이드를 통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자율공시를 활성화
2단계(2025년~)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대하여 공시 의무화
2단계(2030년~)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공시 의무화

연도	~ 2024년	2025년	2030년	비고
의무 대상 기준	거래소 자율 공시 유지	2조원 이상	코스피상장사 전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준비 기간: 3-5년 *의무화 시점을 당기자는 논의 진행 중
대상 기업 수 ('20년 기준 추정치)		• 211개	• 800개	

2. ESG 공시 제도에 관한 규정

(2) ESG 공시 제도에 관한 “국내 동향” - 법적 리스크 개관

• ESG 공시 자료(지배구조/지속가능 보고서) 관련 불성실공시 리스크 존재: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서 ‘불성실공시’ 규제 (자본시장법 제391조 이하)

"ES" 사항	녹색경영정보 관련 사항은 현재 자율공시 대상(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8조, 동 규정 시행세칙 제8조 제7호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6조, 동 규정 시행세칙 제13조 제12호) → 거짓으로 또는 잘못 공시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공시한 경우 공시불이행 성립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9조 제2호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제2호)	≡ 불성실공시제재 벌점, 제재금, 발행 주권해당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 등
	대규모상장법인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사항은 의무공시 대상(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4조의2) → 거짓으로 또는 잘못 공시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공시한 경우 공시불이행 성립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9조 제2의2호)	

• 경영진 개인의 책임:

(1)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상법 제399조)

(2) 이사의 회사 채권자, 주주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상법 제401조)

2. ESG 공시 제도에 관한 규정

(3) ESG 공시 제도에 관한 “국내 동향” - 거래소 가이드언스의 주요 내용

- 상장기업이 ESG 중요정보를 추출/공개하는 체계를 마련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지침
 ↳ 표시광고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거래소 가이드언스를 최대한 준수함이 필수

목차	주요 내용
1. 목적	가이드언스 제정의 목적
2. ESG의 개념	ESG의 개념, 정보 공개의 필요성
3.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ESG 이슈 관리를 위한 이사회 · 경영진의 역할
4. 정보공개원칙	ESG 정보 공개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
5. 중요성	중요성의 개념 및 중요성 평가 절차
6.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절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보고서 작성 절차
7. 공개지표	주요 정보공개 표준 및 권장 공개지표

2. ESG 공시 제도에 관한 규정

(3) ESG 공시 제도에 관한 “국내 동향” - 거래소 가이드언스의 주요 내용

- ESG 정보공개원칙

정확성 (Accuracy)	명확성 (Clarity)	비교가능성 (Comparability) 글로벌 표준을 적용하고, 권장된 지표 및 방법론에 따라 보고
균형 (Balance)	검증가능성 (Verifiability) 독립적인 제3자 검증기관의 검증이 바람직하고, 검증 수준, 범위 및 과정 등을 함께 명시하는 것이 필요	적시성 (Timeliness)

- 공개 대상 정보 선택에 참고 가능한 권고 공개지표(12개 항목 21개 지표)

조직	환경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 대응: 경영진의 역할 • ESG 평가: ESG 위험 및 기회 •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의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배출 • 에너지사용 • 물사용 • 폐기물배출 • 법규위반·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직원현황: 평등 및 다양성, 신규고용 및 이직, 청년인턴채용, 육아휴직 • 안전·보건: 산업재해, 제품안전, 표시광고 • 정보보안: 개인정보 보호 • 공정경쟁: 공정경쟁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2. ESG 공시 제도에 관한 규정

(4) ESG 공시 제도에 관한 “국내 동향” - 환경정보공개시스템(<https://www.env-info.kr/>)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환경기술산업법’)

제16조의8(환경정보의 작성·공개) - 2020. 4. 12. 공표. 6개월 뒤 시행 예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환경정보를 작성·공개하여야 함

1. 제16조의2에 따른 녹색기업

2. 코스피상장사 중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기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

② 제1항에 따라 작성·공개하여야 하는 환경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음. 다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환경정보는 제외함

1. 환경보호, 자원절약,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의 관리를 위한 목표 및 주요활동 계획

2. 환경관리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활용에 관한 사항

3. 환경관리 성과에 관한 사항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녹색경영에 관한 사항

☞ 전년도 용수·에너지 사용량, 화학물질·폐기물 발생량 등(19~27개 항목)을 매년 6월 말까지 등록

연도	2022년	2025년	2030년
의무 대상 기준	(코스피상장사 중) 2조원 이상	5천억원 이상	코스피상장사 전체
대상 기업 수(20년 기준 추정치)	211개	764개	800개

3. ESG 요소 관련 근거 규정

(1) 국제 규범

• ESG “요소” 관련 분야별 주요 국제 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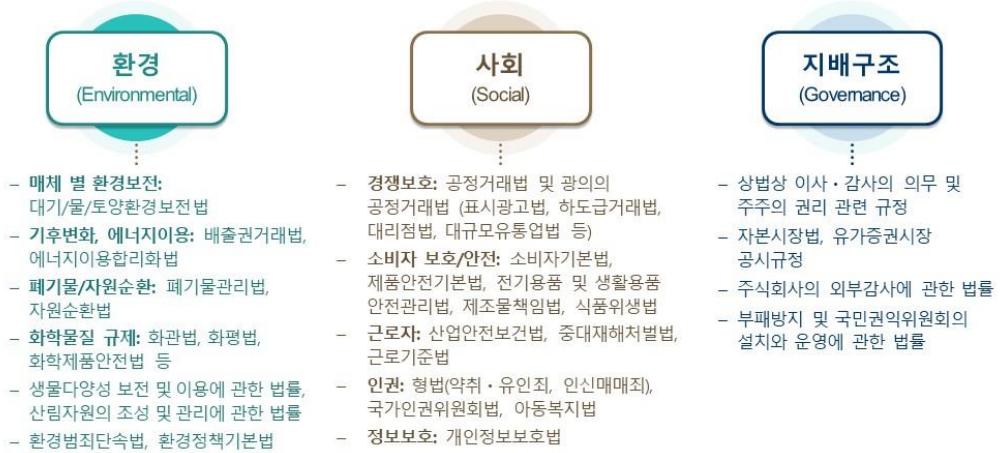
지속가능 비즈니스 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2006)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 (2010) •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2011) •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 (IOSCO): Objectives and Principles of Securities Regulation(2017) •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Industry Standards (2018)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5) •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Recommendations (2017) • Climate Disclosure Standards Board Framework (2019)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1998) • Global Reporting Institute Standards (2000) •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2011) • ILO Principles concerning MNEs and Social Policy (2017)

Source: GIBSON DUNN, Navigating the dynamic ESG landscape: key UK considerations for boards and senior management(2020. 11. 4.)

3. ESG 요소 관련 근거 규정

(2) 국내 법령

· ESG "요소" 관련 분야별 주요 국내 법령



V. 율촌 ESG연구소의 조직 및 서비스 분야·실적

1. 율촌 협업 정신에 따른 ESG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2. ESG 제반 분야에 관하여 원스톱 서비스 제공

서비스 분야	서비스 내용
ESG 리스크 관리	ESG 리스크 관리, 컴플라이언스 전략 수립 및 법적 책임 최소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 ☞ ESG 리스크 예방
ESG 경영 전략	ESG 경영 시스템의 정립 및 실행, ESG 법령/정책의 동향을 기초로 한 신규 사업의 전략(탄소중립 로드맵 등) ☞ ESG 평가 지표의 상승
이사회/경영진의 Best Practice	ESG 경영 시스템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이사회/경영진의 충실의무에 따른 Best Practice ☞ 이사회/경영진이 부담하는 책임의 예방
ESG 보고서 작성·공시	ESG 공시 기준 및 평가 지표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기초로 각 사에게 최선의 이익을 가져오는 기준/지표를 선정하고, 각 사의 ESG 스토리에 부합하는 공시의 내용/시점에 관한 조력 ☞ ESG 평가 등급 개선, 불성실공시 및 부당한 표시광고 등 리스크 예방
ESG에 따른 인수합병	기업이 ESG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인수 대상을 선정하고, 실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ESG 요소를 충실하게 평가하여 의사 결정할 수 있도록 조력 ☞ ESG를 고려한 인수 대상 선정 및 가치 평가 가능
ESG 책임투자	금융기관의 ESG 책임투자에 관한 조언 ☞ ESG 요소까지 고려한 투자 의사결정을 통해 수탁자책임 이행
ESG 소송	ESG 관련 불성실공시 소송, 부당한 표시·광고 소송을 비롯한 다양한 유형의 ESG 소송 대리

3. ESG 제반 분야 관한 풍부한 실적/경험을 보유

서비스 분야	실적 내용
ESG 경영 체계 도입 컨설팅	D그룹(화학, 유통, 항공 분야), C회사(식품 분야), B회사(화학, 환경위생용품 분야), A금융사 등에 대한 ESG 경영 체계 도입 컨설팅 진행 중
ESG 리스크 관리	Compliance Project (엔씨소프트, 롯데그룹, 신세계인터내셔널, 동서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유한킴벌리, 씨모피셔사이언티픽코리아, AK홀딩스,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한샘, SK텔레콤, 녹십자그룹, 하림그룹, 한화그룹, SK하이닉스, 오티스엘리베이터, 두산중공업, 현대자동차, 코오롱 등)
기후변화, 환경법정책	기후변화(배출권 할당, 전기차 보급 등) · 대기 · 수질 · 폐기물 · 화학물질 · 토양 · 환경영향평가 · 생물다양성 등 환경안전보건 규제에 관한 다양한 자문/소송
신재생에너지, 에너지법정책	국내 풍력태양광/바이오매스 발전소 등 개발 프로젝트, 해외 신재생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방사능방재법의 개정 용역, 캄보디아아로스 지역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투자 프로젝트 등에 관한 자문
공정거래, 하도급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등에 관한 다양한 자문/소송
제품안전, 소비자보호	제조물책임, 소비자클레임, 리콜, 표시광고 등에 관한 다양한 자문/소송
산업안전, 중대재해	화학공장 폭발사고, 수중 폭발사고, 추락사고, 빗물저류시설 공사현장 사고, 철도공사현장 트럭전도 사고, 케이블카지주 전도 사고 등 산업안전사고 관련 자문/소송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자문
정보보호	금융기관, 교육기관, 제약회사, 면세점 등에 대한 정보보호 컨설팅 및 금융기관, 래저회사, 신용카드회사 등의 개인정보유출 사고 대응 자문/소송
지배구조 개편, 경영권 분쟁/방어	지배구조 개편 (상일 C&S(舊 대림 C&S), SBS미디어홀딩스, 하림그룹, 한화그룹, 애경그룹, 코오롱그룹 등), 경영권 분쟁/방어 (한진칼, 삼성물산, 롯데, 현대건설, KT&G, 현대그룹, SK, 현대중공업, SK텔레콤 등)



PF Profile



변호사
윤용희

Tel: +82(0)10 3287 7354 E-mail: yhyoon@yulchon.com

Education

- 2014 미국 Stanford Law School(LL.M. in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 2014 미국 Stanford University Hoover Institution 법정책연구과정 수료
- 2012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2008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 졸업
- 2006 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 200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03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Professional Experience

- 2009~현재 법무법인(유) 윤촌
- 2021~현재 국토부 주택도시기금 대체투자위원회 위원
- 2021~현재 한국경제 ESG아카데미 전담 강사
- 2020~현재 환경부 자체감사위원회 위원
- 2020~현재 법률신문 리걸에듀 강사
- 2018~현재 한국환경법학회 이사
- 2017~현재 한국서부발전(주) 고문변호사
- 2016~현재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2020~2021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2016~2017 환경부 고문변호사
- 2014~2015 Sidley Austin LLP 파견근무
- 2014~2015 북가주한미비즈니스협회(KABANC) 이사
- 2006~2009 육군법무관 (군검찰장교)

Representative Deals

- 2019~현재 * 자원재활용법상 재활용분담금에 관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환경부의 입장 변경 도출
- * 토양환경보전법 위반행위 관련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 도출
- * 미국계 화학회사, 일본계 바이오회사, 국내 포장소재회사 등을 위하여 환경 안전 규제 컴플라이언스 구축 업무 자문
- * 신재생에너지사업자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법령해석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환경부의 입장 변경 도출
- * 대기·수질·폐기물·화학물질·토양 환경영향평가·생물다양성 등 환경안전 규제 관련 자문
- * 신재생·원자력 등 에너지 규제에 관한 자문
- 2015~2018 * 화학회사를 대리하여 형사소송(화학물질관리법 위반)에서 무죄판결 도출
- * 제약회사를 대리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 건에서 무혐의결정 도출
- 2009~2014 * 정부를 위하여 배출권거래법의 제정 집행에 관한 자문
- * 정부 대리하여 서울시 자동차 대기오염 집단소송에서 승소
- * 정정개발체제(CDM) 사업으로 획득한 탄소배출권(CER)의 지분 분쟁에 관한 국내 최초의 중재사건에서 자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 율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1, 코르나스타워 38층(삼성동) Tel: 02-628-6200 Fax: 02-628-6228 E-mail: mail@yulchon.com

베트남 (호찌민 사무소)
Unit 03, 4th Floor, MPlaza Saigon, 39 Le Duan St., Ben Nghe Ward, Dis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28-3911-0225 Fax: +84-28-3911-0230 E-mail: hcmc@yulchon.com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
27th floor, East Wing, Lotte Center Hanoi, no. 54 Lieu Giai street, Cong Vi ward, Ba Dinh district, Hanoi.
Tel: +84-24-3837-8290 Fax: +84-24-3837-8230 E-mail: hanoi@yulchon.com

중국 (상해 사무소)
031, 30F, Hang Seng Bank Tower, 1000 Lujiazui Ring Road, Pudong New Area, Shanghai 200120, PRC
Tel: +86-21-6089-3159 E-mail: shanghai@yulchon.com

미얀마 (양곤 사무소)
Unit # 5, Level 4, Unitam Centre Office Bldg, 84 Pan Hlang Street, Sanchaung Township, Yangon, Myanmar
Tel: +95-1-537-088 Fax: +95-1-537-088 E-mail: yangon@yulchon.com

러시아 (모스크바 사무소)
12th Fl. White Gardens Business Center, 7 Ulitsa Lesnaya, Moscow, Russian Federation, 125047
Tel: +7-495-510-5200 Fax: +7-495-510-5228 E-mail: moscow@yulchon.com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사무소)
The Energy, 32nd Floor, SCBD Lot 11A, Jalan Jenderal Sudirman, Kav. 52-53, Jakarta 12150, Indonesia
Tel: +62-21-2978-3888 Fax: +62-21-2978-3800 jakarta@yulchon.com



각국 테마

AI·데이터 계약의 실무와 과제

Practices and Issues in AI/data-related Contracts in Japan

2021.10.26 – 법률사무소LAB-01 파트너변호사 사이토 도모카즈



법률사무소LAB-01

사이토 도모카즈

Tomokazu Saito

변호사(제2도교변호사회), 주식회사 Preferred Networks, 주식회사 메루카리 등을 거쳐 법률사무소LAB-01를 설립. B2B 얼라이언스, 교섭, 계약 전략 및 계획 수립 등,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의 구현과 리걸 플래닝이 전문이다. 2018년부터 경제산업성 'AI·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검토회' 위원, 2019년부터 경제산업성·IPA 《기업에서의 데이터 이용/활용 및 보호 전략 입안을 위한 지침서(안) 작성》 관련 검토회' 위원, 2020년부터 경제산업성 'AI 사회 구현 아키텍처 검토회' 위원 등.

Twitter: @tmczs

CONTENTS

- 1 경제산업성 ‘계약 가이드라인’ 개요
- 2 지식 재산으로서의 **AI**-데이터 보호
- 3 **AI** 이용에 따르는 책임과 거버넌스

경제산업성 ‘계약 가이드라인’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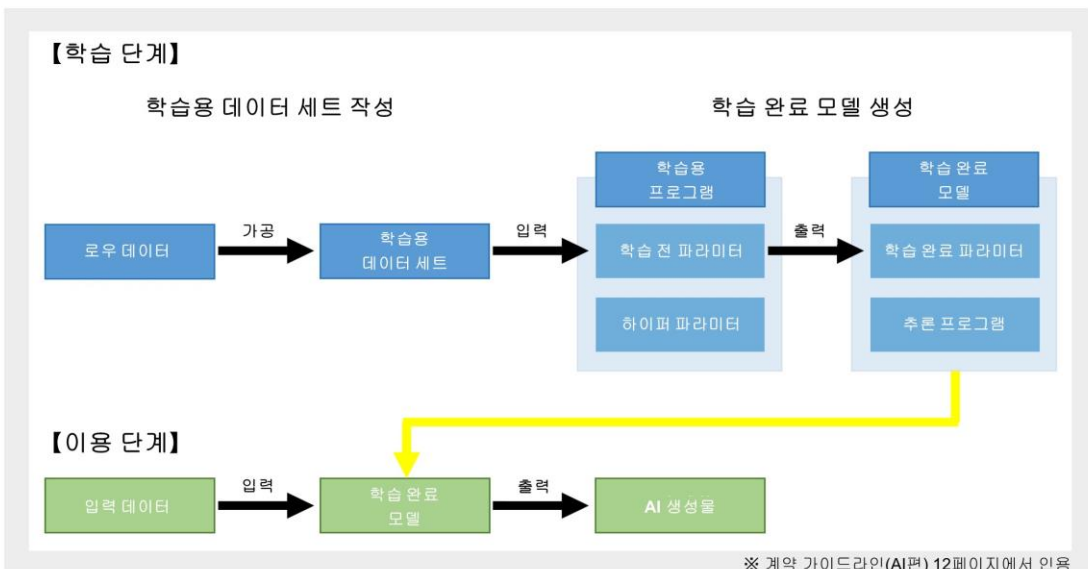
경제산업성 ‘계약 가이드라인’ 개요

- 명칭: AI·데이터 이용에 관한 계약 가이드라인

(English ver. <https://www.meti.go.jp/press/2019/04/20190404001/20190404001-1.pdf>)

- 공표일: 2018년 6월(1.1판: 2019년 11월)
- 목적: 거래 비용을 억제 → 거래 기회의 확대를 촉진
- 구성: AI·데이터 관련 거래의 해설과 모델 계약
 - AI편: **AI 모델(학습 완료모델)의 개발(+ 이용)**
 - 데이터편: 데이터 제공과 공동 창조(+ 공용)

경제산업성 ‘계약 가이드라인’ 개요



지식 재산으로서의 AI·데이터 보호

지식 재산으로서의 AI·데이터 보호

• AI시스템의 개발·이용에 꼭 필요한요소

프로그램

- 학습용 프로그램
- 추론용 프로그램
- 시스템용 프로그램

프로그램 외

- 로우 데이터(+입력 데이터)
- 학습용 데이터 세트
- 파라미터(학습 완료 파라미터)

→ AI 모델=추론용 프로그램+파라미터

※ AI 시스템=학습 완료 모델을 탑재하여 예측, 추천, 콘텐츠 등의 출력을 생성하는 소프트웨어

지식 재산으로서의 AI·데이터 보호

• 개발 계약의 실천과 과제

- ① 데이터 오너십론(데이터의 권리)
- ② 알고리즘 구현 성과의 저작물성(모델의 권리)
- ③ 파라미터의 저작물성(모델의 권리)
- ④ 리버스엔지니어링의 금지와 모델의 재학습
- ⑤ 비밀 정보의 보호와 보수운영상의 개시 필요성

AI 이용에 따르는 책임과 거버넌스

AI 이용에 따르는 책임과 거버넌스

• 개발 계약의 실천과 과제

- ① AI 모델의 ‘오류’론
- ② 학습에 사용하는 데이터의 선택과 품질 관리
- ③ 학습한 경향에서 벗어나는 입력 데이터와 예기치 못한 작동
- ④ 의도하지 않은 AI의 이용 방법과 예기치 못한 작동
- ⑤ 개발의 적법 절차와 리스크 기반의 거버넌스 설계

AI의 이용에 따르는 책임과 거버넌스(참고)

-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는 AI의 이용 사례:
 - 원격 생체 인증 시스템
 - 노동자, 범죄 리스크 등의 평가·결정 시스템
- 거버넌스 체제의 설계 사례:
 - 리스크 관리(특정·분석·평가·감시) 시스템의 구축
 - 학습에 사용하는 데이터의 품질 관리/문서화의 확립·로그
기능의 설계/사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인간에 의한
감시/견고성·사이버 보안의 확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해 주십시오.

법률사무소 LAB-01
대표변호사 사이토 도모카즈 (saito@lab-01.co)

【저서·기사】

《AI·데이터 비즈니스의 계약 실무》
《기계 학습 엔지니어를 위한 지재&계약 가이드》
《전자 계약 도입 가이드북 [국내계약편]》
‘시간과 인원 부족을 전략적으로 극복하는 계약 업무 프로세스의 구축’ 그외 다수

【연락처】

〒110-0008 도쿄도 다이토구 이케노하타3-3-9
URL : <https://lab-01.co>



- 본 자료 중, 의견에 관한 부분은 개인적인 견해이며 소속된 조직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 또한, 본 자료의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합니다.



中國政法大學

CHINA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2021년 한중일 지식재산권 국제 심포지엄

중국기업 지식재산권 전략: 이론, 현실적 수요 및 대책 제안

강연자: 평샤오칭 교수

중국정법대학 지식재산권연구소 소장, 중국지식재산권 법학연구회 부회장

JIAMU DESIGN

목록



中國政法大學

CHINA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CONTENTS

1. 중국기업 지식재산권 전략 이론
2. 중국기업 지식재산권 전략 현실적 수요
3. 중국기업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 제안

JIAMU DESIGN

1. 중국기업 지식재산권 전략 이론

(1) 기업 지식재산권 전략의 기본 의미

기업의 지식재산권 전략은 기업 전략의 범주에 속할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전략 범주에 속한다.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2가지로 정의한다. 첫째, 기업이 시장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경쟁 상대를 억제하며 최고의 경제적 효익을 추구하기 위한 전반적인 계획이다. 둘째, 기업이 지식재산권 제도의 기능과 특징을 충분히 이용해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전반적인 계획이다.

JIAMU DESIGN

(2) 기업 지식재산권 전략의 중요성과 의미

현대 사회에서 지식재산권은 기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경영 자원, 전략 자원, 경쟁자원 및 기업 생산 요소이자, 기업 핵심 경쟁력을 구성하는 중요 구성 성분이 되었다. 지식재산권은 한 국가 내에서 그 지위가 계속 상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 시장 경쟁에 참여해 경쟁 우위를 차지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인 무기이다. 지식재산권이 기업 내에서 차지하는 전략적인 지위는 국가와 사회 생활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계속 높아질 것이다.

JIAMU DESIGN



현대 사회에서 지식재산권의 의미는 이미 회사, 기업 개인 등 주체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좁은 범위를 훨씬 넘어서 다양한 영역에서 기업가의 전략적인 무기가 되었다.

지식경제 시대에, 한 국가 내에서 지식재산권 자원의 창출, 최적화 구성 및 효과적인 활용은 그 국가와 기업이 얼마나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전략을 실시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에 따라, 한중일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권 전략을 잇달아 발표했다.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체계에서 기업 지식재산권 전략은 핵심적 지위를 차지한다.

JIAMU DESIGN



중국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체계의 경우, 2008년 6월, 국무원은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개요》를 발표했다. 중국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에는 지식재산권 창출, 지식재산권 운용,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 관리 등의 단계와 내용이 포함된다. 중국 지식재산권 전략 체계에는 국가, 지역(구역), 산업과 기·사업체 차원의 전략이 있고 그 중 산업과 기·사업체 전략은 중국 지식재산권 전략 체계를 뒷받침하는 기본이자 핵심이다.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 성과는 결국 기업이 실시한 성과를 통해 구현되어야 한다.

JIAMU DESIGN



중국은 2021년 9월 또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개요(2021-2035)》를 통해 중국이 지식재산권 대국에서 지식재산권 강국으로 도약하도록 힘써 애쓰고,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의 심화와 확대를 중시하겠다고 발표했다.

(3) 기업 지식재산권 전략의 본질적 속성

기업 지식재산권 전략은 지식재산권 제도 및 그 파생 기능을 활용해 시장 우위를 차지하고 최대한의 이익을 얻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 지식재산권 전략은 시장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그 성공 가능 여부도 주로 시장에 의해 검증되어야 한다.

JIAMU DESIGN



현재 중국기업은 시장 지향의 지식재산권 전략 체계를 수립하고, 전략의 기반을 시장 위에 견고하게 세워야 한다. 지식재산권 창출, 지식재산권 보호, 관리, 운영은 모두 시장이라는 플랫폼을 벗어날 수 없다.

기업 지식재산권 전략은 지식재산권 법률 및 그 제도에 대한 종합적 활용과 전략적 운용이며, 기업이 지식재산권 제도의 특징, 기술적 특징, 시장 경영 특징과 비즈니스화 경영 모델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것이고, 기업이 기술 개발과 혁신, 브랜드 기반을 핵심으로 경쟁 업체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국내외 시장을 개척 및 점령하여 경쟁 우위를 얻는 동태적 운영 프로세스이다. 이로써 기업 지식재산권 전략 역시 현대 기업이 지식을 관리하는 주요 형태임을 알 수 있다.

JIAMU DESIGN



2. 중국기업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의 현실적 수요

(1) 중국 국내 시장 경쟁의 국제화 및 국제 시장 경쟁의 글로벌화

세계 경제가 일체화되면서 중국 국내 시장과 국제 시장이 점차 통합되었고, 중국 국내 시장은 이미 국제 시장의 일부가 되었다. 중국 기업이 직면한 시장 경쟁은 날로 가혹해졌고, 국내 시장 경쟁의 국제화 및 국제시장 경쟁의 글로벌화가 나타났다. 특히 외국 기업이 국내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현실이다. 다국적 기업은 중국 국내에 공장을 설립하거나 가공 및 재판매 등을 통해서 글로벌 제품 경쟁을 중국 국내로 끌어들었다. 해외 다국적 기업과 기업들은 잇달아 전략적 고려에서 출발해 지식재산권을 방패막이 삼아 중국에 겹겹의 지식재산권 “봉쇄선”과 “지뢰밭”을 설치하여 중국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

JIAMU DESIGN



최근 몇 년 해외 기업이 중국에 구축한 지식재산권 장벽이 중국기업을 포위하고 있는 형세이다. 국내외 기업 경쟁의 초점도 무역장벽에서 기술장벽으로 옮겨가고 있고, 기술장벽은 지식재산권 및 그 파생내용을 수단으로 하여 이미 제품 측면을 넘어 국제 경쟁의 중요한 무기가 되었고, 지식재산권은 날로 다국적 기업이 중국 국내외 시장 점유율을 빼앗고 중국 경쟁업체를 제압하는 중요한 전략이 되었다. 해외기업은 그 보유 기술과 브랜드 우위를 이용해 중국 국내 시장을 점령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형세에 맞서, 중국 기업은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국내외 시장의 국제화 경쟁에 참여해야 한다.

JIAMU DESIGN

(2) 기업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로 중국기업의 국내외 시장 경쟁력 향상
 날로 격렬해지는 국제 경쟁 속에서 지식재산권은 국제 경제, 과학기술 경쟁의 초점이 되었다.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및 지식재산권 보유 개수와 질은 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다. 특히 경제 글로벌화와 지식재산권 국제화 환경에서 지식재산권 제도는 날로 각국이 자국의 과학기술,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제 시장을 개척 및 점령하는 중요한 무기가 되었다.

JIAMU DESIGN

기업 핵심 경쟁력 육성에서, 지식재산권 전략은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자체가 기업 핵심 역량의 한 지표이기 때문이다.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과 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기업 지식재산권 전략을 제정하고 실시해야 한다.

최근 몇 년, 국가지식재산권국과 지방 각급 지식재산권 행정관리부문의 지도 하에, 중국 기업은 잇달아 지식재산권 전략을 제정했다. 예를 들어,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에서 중앙 특대형기업 지식재산권 전략을 제정하고 실시했다. 본인은 운 좋게도 중국 국유 특대형기업의 첫 번째 지식재산권 전략 계획과 실시방안의 제정 및 승인과 검수를 공동 주관하여 어느 정도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JIAMU DESIGN



(3) 기업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로 혁신주도발전전략과 혁신형 국가
건설 요구에 이바지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서에서 중국이 혁신주도발전 전략을 실시한다는 중대 결정을 발표했다. 혁신주도발전전략은 현재 중국 경제 사회 발전에 필수적인 것으로 중국이 혁신력을 향상시키고, 혁신형 국가를 구축한다고 제안한 위대한 목표의 심화 추진이다.

JIAMU DESIGN



지식재산권 전략은 중국 혁신주도발전전략을 현실화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기업 지식재산권 전략은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에서 기초와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기업이 지식재산권 전략을 실시하는 것은 중국혁신주도발전전략을 추진하고 보장하는 데에도 필요한 것이다.

상술한 현실적 수요에 따라 중국 지역, 산업 차원에서 상응하는 지식 재산권 전략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전략 계획에서는 어떻게 기업이 지식재산권 이익을 얻게 하고, 지식재산권 전략 능력을 향상시킬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많은 중국기업에서 지식재산권 전략 계획과 실시방안을 제정 및 실시하였고, 현저한 성과를 거뒀다.

JIAMU DESIGN

3. 중국기업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 제안

(1) 시장 운영과 지식재산권 가치 구현을 기반으로 지식재산권 전략의 포트폴리오 효과 강화

2020년 11월 말 중앙정치국 집단학습에서 시진핑 총서기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작업”에 대해 “시장 주체가 특허, 상표, 저작권 등 다양한 유형의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효과를 발휘하도록 인도”할 것을 지적했다.

JIAMU DESIGN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개요(2021-2035)》에서 “기업 주체, 시장 지향의 고품질 혁신 메커니즘 개선”, “효율적이고 원활하며 가치가 충분히 구현되는 운용 메커니즘의 개선 운영”, “규칙적이고 활력이 충만한 시장화 운영 메커니즘 구축”할 것을 명시했다.

중국기업 지식재산권 전략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려면 다음 단계에서 지식재산권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고 특히 기술과 시장 경쟁력을 가진 고가치 지식재산권을 중시해야 한다.

JIAMU DESIGN



중국 지식재산권 전략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려면 지식재산권의 가치 전환과 효율적 운영을 중시하고 지식재산권의 경제 가치와 경쟁 가치를 높임으로써 기업 재무 실적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기여도를 높이고 중국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계속 높여야 한다.

(2)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사업 총괄 관리, 실시

중국기업 지식재산권 전략에는 중대형 기업의 상황이 중소기업보다 전반적으로 양호한 불균형 상태가 존재한다. 중소기업은 중국 경제 발전의 절반을 이끌고 있다. 이 때문에, 합리적으로 자원을 분배하고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전략을 지원 및 추진할 필요가 있다.

JIAMU DESIGN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개요(2021-2025)》에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사업의 심화 및 추진을 명시했다.

(3) 기업 지식재산권의 국제화 전략 중시

현재까지, 중국기업이 실시한 지식재산권 전략은 여전히 미흡하다. 특히 국제화 기업은 “사전준비” 전략을 중시하고, 전향적으로 지식재산권을 배치해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JIAMU DESIGN

(4) 우수기업의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 경험 보급, 유럽·미국·한국·일본 등 기업의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 성공 경험 및 방법 참고

중국의 화웨이, 하이얼 등의 일부 우수기업이 국제 지식재산권 전략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전략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널리 보급하고 실시할 수 있다. 또한, 해외기업 특히 다국적 기업이 지식재산권 전략에서 쌓은 경험과 책략도 진지하게 연구하고 적절히 참고해야 한다.

JIAMU DESIGN

(5) 기업 지식재산권 문화 구축

문화는 소프트파워이다. 기업 문화도 역시 그렇다. 기업의 지식재산권 문화는 기업 문화에 속한다. 기업 지식재산권 문화를 구축하여 기업 지식재산권 의식을 향상시키고 지식재산권 전략의 실시를 추진한다.

(6) 기업 지식재산권 제도, 관리기구와 내부지식관리시스템 최적화 및 개선, 기업 지식재산권 관리자 자질 향상

이러한 조치는 기업이 지식재산권 전략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보장이 된다.

JIAMU DESIGN



강연을 마칩니다. 많은 지적 바랍니다!

JIAMU DESIGN

2021년 한중일 국제심포지엄

한국 디자인보호법상 화상디자인의 법적 취급
(2021. 10. 21. 시행 전후 비교)

해움특허법인 변리사 김웅

CONTENTS

1. 2021. 10. 21. 디자인보호법 시행 전후 비교
2. 2021. 10. 21. 디자인보호법 제2조 개정 이유
3. 2021. 10. 21. 이전 화상디자인 개념
4. 2021. 10. 21. 이후 화상디자인 개념
5. 2021. 10. 21. 이후 화상디자인 출원시 유의사항
6. 2021. 10. 21. 이후 화상디자인권 보호범위(유사 판단)
7. 2021. 10. 21. 이후 조약 우선권주장을 수반할 경우
8. 2021. 10. 21. 이후 보정 가능성
9. 결론



1. 2021. 10. 21. 디자인보호법 시행 전후 비교

2021.10.21. 이전	2021.10.21. 이후
<p>제2조(정의)</p> <p>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제42조는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p> <p>(중략)</p> <p>7. "실시"란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를 말한다.</p>	<p>제2조(정의)</p> <p>1(개정).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p> <p>2의2(신설).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 기호 등(기기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하고, 화상의 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p> <p>(중략)</p> <p>7.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p> <p>가. 디자인의 대상이 물품(화상은 제외한다)인 경우 그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p> <p>나(신설). 디자인의 대상이 화상인 경우 그 화상을 생산·사용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거나 그 화상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청약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또는 그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도·대여·수출·수입하거나 그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p>



2. 2021. 10. 21. 디자인보호법 제2조 개정 이유

- 기존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정의를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물품성이 있는 것만을 보호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공간 시계, 레이저 가상 키보드, 홀로그램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자인이 출현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러한 신기술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 형태가 없거나 물품에 표시된 형태가 아니어서 디자인 그 자체로서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임.
- 미국, 유럽, 일본 등이 이미 신기술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디자인권 확보의 어려움은 국내외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관련 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음.
- 이에 화상을 물품의 한 유형으로 구분하고 기능성이 있는 화상디자인을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화상에 대한 실시행위를 새롭게 규정하여 신기술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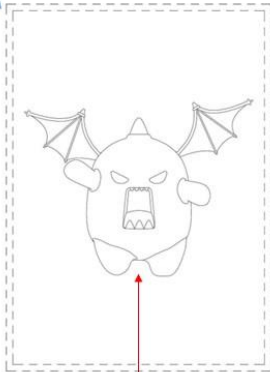
3. 2021. 10. 21. 이전 화상디자인 개념

해움특허법인
HAEUM Patent & Law Firm

P.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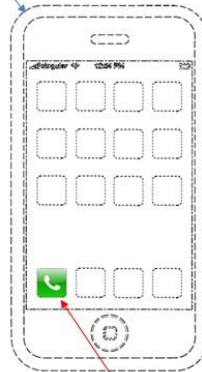
■ 물품 부분의 화상디자인

물품
(디스플레이 패널)



캐릭터 GUI

물품
(이동통신기기)



전화버튼 GUI

“물품 부분의 화상디자인”은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일시적인 발광 현상에 의해 시각을 통해 인식되는 모양 및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함
 <물품의 부분에 표현되어야 하고, GUI의 기능성은 고려하지 않음>



4. 2021. 10. 21. 이후 화상디자인 개념

해움특허법인
HAEUM Patent & Law Firm

P. 6

■ 화상디자인(기기 조작 또는 기능 발휘) <신설>



캐릭터 GUI



전화버튼 GU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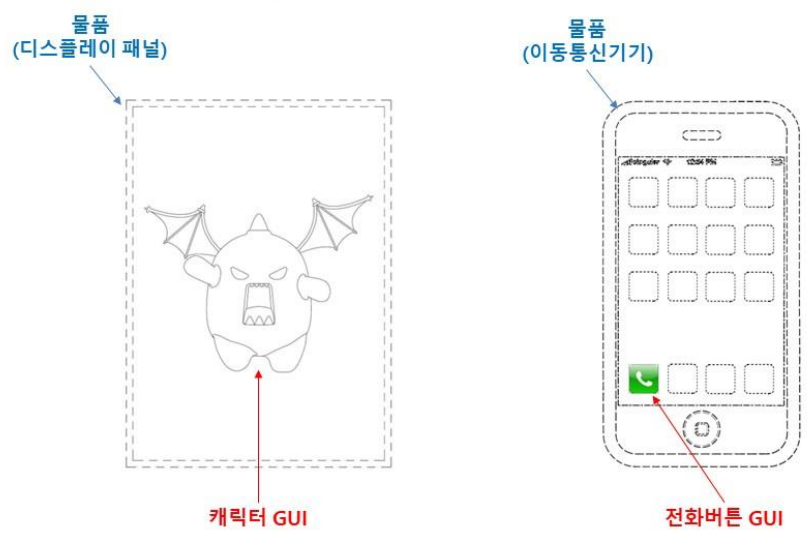
키보드 GUI

시계 GUI

공간에
표현되는
GUI

“화상디자인”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 기호 등으로서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함
 <물품의 부분에 표현하지 않아도 되지만, GUI의 기능성은 반드시 있어야 함>

■ **물품 부분의 화상디자인 <그대로 유지>**



“물품 부분의 화상디자인”은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일시적인 발광 현상에 의해 시각을 통해 인식되는 모양 및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함
(물품의 부분에 표현되어야 하고, 화상디자인의 기능성은 고려하지 않음)



2021.10.21.



5. 2021. 10. 21. 이후 화상디자인 출원시 유의사항

■ 물품 부분의 화상디자인

-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해야 함
- [물품류]는 물품이 속하는 류(class)를 기재함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화상디자인이 표시되는 (물품)”라고 기재함
- 도면은 물품의 형상은 파선으로 도시하되, 등록받고자 하는 화상디자인은 실선(또는 그래픽)으로 도시함.
- 정면도만 첨부해도 무관하며, 이 경우 나머지 도면은 [디자인의 설명]에 생략 취지를 기재함.

■ 화상디자인(기기 조작 또는 기능 발휘)

- **전체디자인 또는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음
- [물품류]는 제14류를 기재함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정보통신용 화상”, “수치입력용 화상” 등과 같이 기기 조작 또는 기능 발휘를 위한 용도를 기재해야 함.
- 도면은 평면 화상 또는 입체 화상의 전체적인 형상, 모양, 색채 등이 명확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도시해야 함.
- [디자인의 설명]에는 기기 조작 또는 기능 발휘에 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6. 2021. 10. 21. 이후 화상디자인권 보호범위(유사 판단)

■ 물품 부분의 화상디자인

- 물품 부분의 화상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는 경우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음
- 물품을 전제로 하는 바, 동일하거나 유사한 화상디자인이더라도 **물품이 비유사한 경우** 침해를 주장할 수 없음
- 침해 여부, 즉 유사 여부 판단시 화상디자인의 참신성, 관용성, 화상디자인의 기능, 용도, 형태, 차지하는 위치, 크기, 범위, 배치, 그래픽 표현, 확대/축소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 화상디자인(기기 조작 또는 기능 발휘)

- 화상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는 경우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음
- 기기 조작 또는 기능 발휘를 전제로 하는 바, 동일하거나 유사한 화상디자인이더라도 **기기 조작 또는 기능 발휘가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침해를 주장할 수 없음.
- 침해 여부, 즉 유사 여부 판단시 기기 조작 또는 기능 발휘의 유사 또는 비유사 여부에 대해 상당한 다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원칙

- 출원의 형식이나 디자인을 표현하는 방식과 관계없이 1국 출원(일본 또는 중국)에 표현된 디자인 가운데 한국에 출원된 디자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우리나라에 출원된 디자인이 1국 출원에 표현되어 있는지 여부는 해당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 있어서 통상의 지식에 기초하여 1국 출원의 **전체 기재내용 및 최초에 출원한 국가의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물품 부분의 화상디자인으로 등록 받고자 하는 경우

- 1국 출원 시 화상디자인을 특정 물품의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만약 화상디자인을 포함하는 전체디자인으로 출원한 경우라도 **화상디자인만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명확한 경우** 우선권주장의 동일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
- 1국 출원 시 화상디자인이 발휘하는 기능성에 대해 상세하게 기재할 필요는 없음.
-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정면도**가 명확할 경우 우선권주장의 동일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

화상디자인(기기 조작 또는 기능 발휘)으로 등록 받고자 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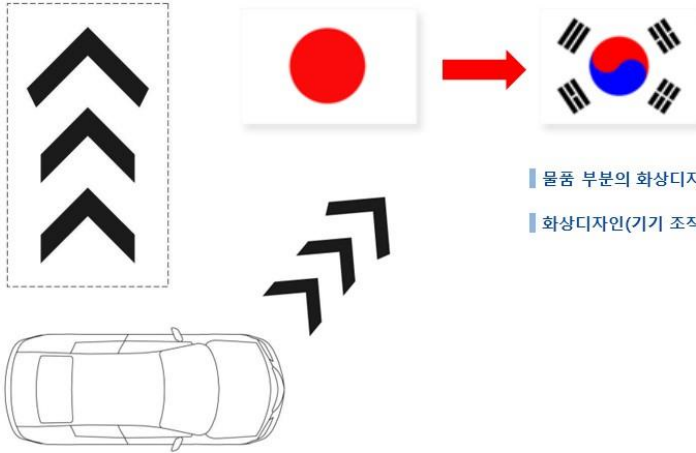
- 1국 출원 시 화상디자인을 **전체디자인 또는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해야 함.
- 1국 출원 시 화상디자인이 발휘하는 **기능성(기기 조작 또는 기능 발휘)**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 입체 (3D) 화상일 경우 **사시도 및 정투상도법에 의한 6면도 또는 이에 준하는 도면**이 도시되어야 함.

7. 2021. 10. 21. 이후 조약 우선권주장을 수반할 경우

해움특허법인
HAEUM Patent & Law Firm

P. 13

예시 사례



■ 물품 부분의 화상디자인 (X)

■ 화상디자인(기기 조작 또는 기능 발휘) (O)

7. 2021. 10. 21. 이후 조약 우선권주장을 수반할 경우

해움특허법인
HAEUM Patent & Law Firm

P. 14

예시 사례



■ 물품 부분의 화상디자인 (O)

■ 화상디자인(기기 조작 또는 기능 발휘) (O/X)



원칙

- 출원서에 적힌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 및 도면의 기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초에 출원된 디자인과 보정된 디자인 간에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요지변경으로 판단한다.**
- 이 경우 조약에 따른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변경 여부 판단시에는 **1국 출원을 참작한다.** 아래 예시는 1국 출원디자인을 참작하여 보정을 인정한 “조명등용 본체” 사례임.



1국 출원디자인

한국 출원디자인

보정된 디자인



예시 사례





예시 사례



- 2021. 10. 21. 시행법은 “화상”을 물품에 포함시켜 독자적인 보호대상으로 인정함.
- 그러나, “화상”은 기기 조작에 이용되거나 또는 기능이 발휘되는 것을 전제로 함.
- 2021. 10. 21. 이후 한국의 화상디자인 보호방안은 기존 “**물품 부분의 화상디자인**”과 신규 “**화상디자인(기기 조작 또는 기능 발휘)**”의 두가지 방식으로 운영됨.
- 기존 “물품 부분의 화상디자인”은 기기 조작 또는 기능 발휘와 같은 기능성을 요구하지 않지만, 반드시 물품을 전제로 부분디자인 출원 형식을 갖추어야 함.
- 신규 “화상디자인”은 반드시 물품을 전제로 하거나 부분디자인 출원 형식을 요구하진 않지만, 반드시 출원서 및 도면에 기기 조작 또는 기능 발휘에 관한 설명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함.
- 따라서, 한국에서 “화상디자인”을 적절히 보호받기 위해서는 **두가지 화상디자인 출원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기초로 **1국 출원 시 미리 철저히 준비**해야 함.

Q & A

